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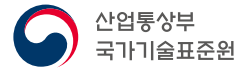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451020-100001-10

# 2025 무역기술장벽 연계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2025 무역기술장벽(TBT) 연계보고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043-870-5521~28 Fax:043-870-5682 E-mail:tbt@korea.kr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종합지원센터



# 2025 무역기술장벽 연계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각국은 산업 주권을 수호하는 핵심 요소로 기술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5년 제·개정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하며 유례없는 수치(5,206건, WTO TBT 통보건수)를 기록한 것은, 이제 기술규제 자체가 수출 현장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고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와 에코디자인 정책에서 보듯, 최근의 규제는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결합하며 그 외연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개별 품목의 규격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전선을 지키는 최일선의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총 1만 2천여 건의 규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진한 다각적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총 164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인도가 철강 원제품 인증 확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에 대한 중복 인증을 요구하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용 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연간 약 28억 달러 규모의 철강 수출 차질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약 14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차질이 우려되었던 호주의 화학물질(DBDPE)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단기적인 애로 해소를 넘어, 우리 산업의 중장기적인 대응 체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협력국은 물론 아세안 등 신흥시장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기술규제 정보포털인 'KnowTBT'를 '해외인증·기술규제 정보포털'로 고도화하여 산업 현장의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디지털 원스톱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규제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협력과 민관 소통을 기반으로 기술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2025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부터 실질적인 대응 사례까지 핵심적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기업과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장 김대자

# 2025년 TBT 대응 하이라이트



## WTO TBT 위원회 참여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 참여 (3월, 6월, 11월)



- ▶ STC 20건 제기(중복 제외 13건), 이 중 5건 해소
- ▶ 제3차 위원회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 세션에서 국내 전문가가 좌장 연사를 맡아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규제 동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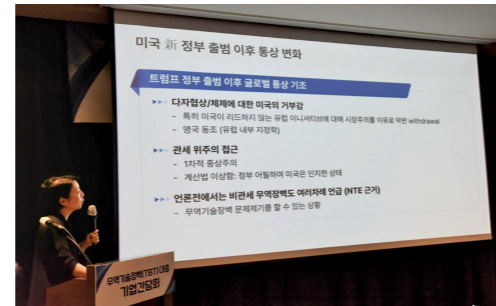


## 기업 소통 및 협력

TBT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4월)



- ▶ 미국 新 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주요 동향 공유
- ▶ 수출기업 애로 청취 및 대응 방향 논의



산업단지공단과 기술규제 협력 (7월)

- ▶ '국가기술표준원-산업단지공단-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발굴·해소 추진
- ▶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지원 안내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7월~11월)

- ▶ 주요국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산업별(전자정보, 기계·에너지·화학 등)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 ▶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후속 컨설팅 지원 연계



# 2025년 TBT 대응 하이라이트



## 해외 협력

### 아세안 기술규제 당국 초청, 에너지 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 개최 (9월)

- ▶ 에너지 효율 기술규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협력 체계 구축 및 규제 현황 공유
- ▶ 아세안 에너지 효율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규제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
- ▶ 국내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적용 사례 및 시험방법 소개



### 인도 표준국(BIS) 방문, 양자협력 및 기업간담회 개최 (9월)

- ▶ 국가기술표준원(KATS)-인도 표준국(BIS) 간 표준 적합성평가 분야 MOU 체결 추진에 합의
- ▶ 철강-플루엔 등 BIS 인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 방안 논의
- ▶ 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BIS 인증 애로사항을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양자협력 추진 (9월)

- ▶ 국가기술표준원(KATS)-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간 2025-2026 기술협력 이행계획(Action Plan) 체결
- ▶ 기술규정·표준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작업반 구축 등 합의



###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초청, 양자협력 및 기업간담회 개최 (9월)



- ▶ 국가기술표준원-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간 기술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 주요 수출품목 중심의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 운영 및 규제 협력방안 도출에 합의
- ▶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기술규제 동향 청취 및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공유



# 2025년 TBT 대응 하이라이트



## TBT 정보제공 및 홍보

### 신기술·신산업 TBT 대응 포럼 개최 (4월, 7월, 12월)

- ▶ 에코디자인, 배터리, AI·사이버보안,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 ▶ TBT 대응 포럼을 개최하여 분야별 주요 규제 동향 이슈 사항 공유 및 기업 의견수렴



### 품목별 협의회 개최 (1월~12월)

- ▶ 산업별 협 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 동향을 기업에 배포 및 TBT 애로사항 발굴
- ▶ 관련 협 단체, 기업,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TBT 대응방안 논의



### 제2회 글로벌 TBT 포럼 개최 (10월)



- ▶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EU 규제당국자 및 분야별(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전문가 초청
- ▶ 글로벌 TBT 포럼을 개최하여 EU 기술규제 동향 전략 주제 발표 및 대응 방안 패널 토론



### 제12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12월)



- ▶ 기술규제 대응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 ▶ 정부 포상 16점 수여



# 2025년 TBT 대응 하이라이트

## TBT 정보제공 및 홍보

### 모닝와이드 홍보 (7월)



- ▶ 수출의 중요성 및 기술규제 대응 사례 소개
- ▶ 기업·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술규제 대응 역할 강화의 중요성 제시



### 다큐S프라임 홍보 (11월)



- ▶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 소개
- ▶ 국가기술표준원 역할 및 TBT종합지원센터 지원 활동 소개
- ▶ 수출기업의 TBT 대응 사례 소개



# CONTENTS

2025  
무역기술장벽 연계보고서

<b>발간사</b>	002
<b>2025년 TBT 대응 하이라이트</b>	004

## PART.1

<b>TBT 대응 개요</b>	1. TBT 대응의 중요성	016
	2. TBT 대응 체계	020
	2.1. 국가기술표준원(TBT중앙사무국)의 역할	020
	2.2. TBT 대응 절차	025

## PART.2

<b>TBT 대응 사례 및 성과</b>	1. TBT 대응 및 애로해소 사례	032
	2. 기업의 TBT 대응 전략 및 성과	058
	2.1. 현대자동차	059
	2.2. 롯데케미칼	064
2.3. LG전자	068	

## PART.3

<b>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b>	1. WTO TBT 통보문 동향	074
	2. WTO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086

## 부록

1. WTO TBT 협정의 이해	100
2. WTO TBT 통보 절차	104
3. FAQ(10문 10답)	116

2025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PART. 1

## TBT 대응 개요

1. TBT 대응의 중요성
2. TBT 대응 체계

# 01 TBT 대응의 중요성

II



WTO TBT 협정은 국제표준 준수, 통보 및 의견수렴 의무 등을 통해 무역장애 최소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비관세장벽의 대표 사례인 무역기술장벽(TBT)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되며 국제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신기술·신산업 규제 도입이 급증하였고, TBT 통보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포럼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TBT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 중심의 무역장벽은 완화되었지만, 각국은 여전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무역수지 불균형,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기술규제를 통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공고 등의 법령에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대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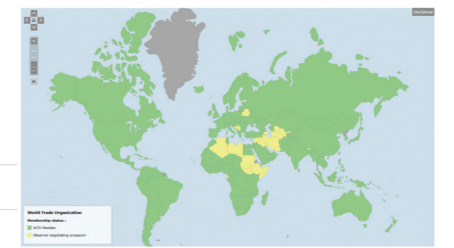
또한, 기술규정, 시험·검사·인증, 적합성평가 절차 등은 국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타이어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시험인증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에어컨의 과도한 에너지 효율 성능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 WTO



<b>설립</b>	1995. 1. 1.
<b>설립근거</b>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
<b>역할</b>	'86년 시작된 UR협상 후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추진을 위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
<b>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무역협정 관련 행정업무</li> <li>무역협상 포럼</li> <li>무역분쟁 조정</li> <li>국가별 무역정책 감독</li> <li>개도국 기술지원 및 훈련</li> <li>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li> </ul>
<b>본부</b>	스위스 제네바
<b>회원국</b>	166 개국 (2025 현재)



## 기술규제는 환경, 안전 등 공익을 위한 정책수단이나,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기술규제 통보는 과거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와 함께 발행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1995년 전체 통보의 21.3% 수준에 머물렀던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2004년 64.2%(신규 통보 64.0%)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각각 86.4%, 88.2%를 차지하였다.

WTO TBT 통보문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389건을 시작으로 2005년 897건, 2015년 1,975건, 2025년 5,206건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단위로 두 배 내외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기술규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술규제는 제품 성능·안전 중심에서 AI 신뢰성·안전성, 사이버보안, 데이터 품질 및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신뢰' 요건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자율주행·자율제조 등을 중심으로 기능안전 관점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탄소중립·순환경제 기조가 본격화되며 전기차·배터리·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지속가능성 요구가 정교화되고 화학물질 관리 강화 흐름도 지속되어, 기업은 전주기 관점의 복합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규제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규제 범위와 요구 수준이 고도화·다변화됨에 따라, 비관세 무역장벽

으로서의 기술규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 인식과 체계적인 TBT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 교역국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 GATT TBT 협정을 채택하였고, 이듬해인 1980년 1월 1일 TBT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제한적이었다. 1995년 1월 1일 WTO 체제 출범 이후 128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여 강제성 있는 WTO TBT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요건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이 무역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에 관련한 무역조치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부당한 조치는 각국의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서 정의한 위생 및 검역조치와 정부 조달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참고로 SPS 협정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관련 규제는 국제 무역의 중대한 영향 초래**

TBT 협정의 주요 원칙은 첫째,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할 때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하고 채택하며 적용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일부를 채택해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로 인해 국제표준이나 관련된 일부가 목적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할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셋째, 제·개정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제시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마련해야 한다.



# 02 TBT 대응 체계

II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TBT 통보·질의처 기능을 수행하고, FTA TBT 총괄 조정, 규제 대응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산업 분야별 협·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의 TBT 대응 활동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TBT 대응 절차는 해외기술규제 정보 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 2.1. 국가기술표준원(TBT중앙사무국)의 역할

### TBT 통보·질의처 역할 수행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해 과학적 또는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령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신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차별적인 기술규제를 적용하는 보호 무역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는 우리 수출기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외의 기술규제 변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수출품에 예기치 않은 통관 문제가 생기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우리 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해소를 위해 해당국과 376건의 애로에 대해 협의하였다.

불합리한 기술규제나 자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는 WTO를 통해 상대국에 무역 현안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 2025년 WTO TBT 위원회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sup>1)</sup>은 209건<sup>2)</sup>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19건) 증가하였다. 2024년 신규 STC는 전체 STC의 약 17.4%에 해당하였으나

2025년에는 그 비율이 19.1%로 증가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제기한 TBT 관련 문의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TBT로 애로를 겪을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상대국과 양자·다자간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부처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정리·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공식 통보·질의처 역할을 수행

현재 166개 WTO 가입국 전체 중 162개국이 TBT 공식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약 77%인 125개 국가가 표준대표기관, 경제부, 외교부 등의 단일창구(미국(NIST), 프랑스(경제재정부), 중국(GACC), 브라질(INMETRO), 멕시코(DGN), 캐나다(외교부), 스페인(경제통상기업부), 호주(외교통상부), 일본(외교부)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37개국은 복수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TBT 협정문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1996년 2월부터 TBT 질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품목별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산품 분야를,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분야를, 보건복지부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를 담당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공식 TBT 질의처를 단일 창구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하고, 농산물 분야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1)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demns, STC):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2) STC 제기 건수: 1995년 4건→2000년 45건→2005년 32건→2010년 120건→2020년 213건→2021년 256건→2022년 241건→2023년 206건→2024년 190건→2025년 209건



[그림 1-1]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

WTO에 통보되는 품목 중 농산물 분야의 비중은 약 8.4%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관련 TBT 질의의 상당수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실상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BT 공식 질의처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WTO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 TBT 사무국에 통보한 기술규정을 비롯한 국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해당한다. 해외 이해관계자가 질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답변하고 자료를 송부하거나, 해당 관계부처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반대로,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궁금한 점이나 애로를 겪을 경우,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제기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2025년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신설된 규제(제정 및 개정안 포함) 중 통보대상에 해당하여 WTO에 통보한 규제는 총 97건이다. 그중 신규 통보문 형식은 94건, 기존 통보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통보(Addendum) 형식, 기존 통보문의 오류를 정정하는 수정통보(Corrigendum) 형식, 시행 전 규제 내용 변경 등 개정통보(Revision) 형식 각 1건이었다.

2025년에 통보한 우리나라 규제 97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42건으로 과반(43.3%)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7건(27.8%), 국립전파연구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8건(8.2%), 산업통상부가 4건(4.1%),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이 각 2건(2.1%), 경찰청 및 소방청이 각 1건(1.0%)을 통보했다.

[표 1-1] 우리나라의 TBT 통보·질의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별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TBT 통보문	1,030	1,230	1,530	1,896	1,869	1,771	2,194	2,137	2,237	1,975
한국 TBT 통보문	29	37	33	57	45	47	77	49	85	80
한국 질의 및 회신	72	158	138	219	76	84	78	101	117	9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TBT 통보문	2,329	2,581	3,063	3,337	3,351	3,960	3,897	4,068	4,334	5,206
한국 TBT 통보문	83	51	64	69	71	117	76	68	57	97
한국 질의 및 회신	95	124	119	120	129	145	155	170	171	376

2025년에는 WTO 회원국이 발행한 통보문(5,206건) 및 숨은 기술규제(6,962건) 발굴을 통해 총 12,168건의 기술규제를 검토하였다. 그중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376건의 규제에 대해 해당국과 협상하였으며, 164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TBT 총괄 조정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 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에서 TBT 협정은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 협정 기반의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 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TBT 협상은 국내외 각종 시험, 검사, 인증 라벨링 등 기술적인 요건 및 기준과 표준 등의 상이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제4차 한-칠레 FTA 협상(2000. 12.)까지는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이 TBT 분과장을 맡았으나, 2002년 제5차 협상 이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분과장으로서 모든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BT 분과장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술규제 담당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를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TBT 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일부 FTA 협상에서도 의견수렴 등 대표단 구성 및 운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의창구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2007년 미국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한-미 FTA 협상

시 미국은 기존 3개로 운영하던 한국 질의창구의 일원화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원활한 협정이행을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을 질의처로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였다. 2008년 9월에 출범한 TBT 중앙 사무국은 단일 질의처와 통보기능을 비롯해 양자(FTA) 및 다자(WTO)간 TBT 협상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TBT 관련 업무를 조정하며 KnowTBT 포털(www.knowtbt.kr)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TBT 업무를 전담한다.

한-미 FTA 협정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든 FTA TBT 협정에서 총괄기관(조정자, 코디네이터 등)으로 지정되었다.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체결한 6개 협정[한-칠레(2004. 4.), 한-싱가포르(2006. 3.),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2006. 9.), 한-아세안 10국(2007. 6.), 한-인도(2010. 1.)]의 경우 TBT 코디네이터 관련 규정은 없지만 TBT 분과가 열릴 경우, 사실상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FTA TBT 대응조직 변천사

- 2006. 6.: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및 대응을 위한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2008. 9.: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기술표준원(현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 설립
- 2013. 12.: 국가기술표준원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규제대응국(4과) 신설

### 규제 대응 지원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질적 수준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대응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TBT 협정 이행과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3차례 부처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정교화되는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등 최신 규제를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TBT 애로해소는 당사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빈번한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 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자회의, 공동 워크숍, 기업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TBT 대응을 주도한다.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주요 품목 관련 기술규제, 인증제도 및 연계 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기술규제 정보를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의견 청취 및 수렴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활동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수출시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 2.2. TBT 대응 절차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무역기술장벽을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BT 대응 절차는 [그림 1-2]과 같이 해외기술규제 정보 수집, 조사 분석, 전략 수립, 대응의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WTO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각국의 통보문을 입수하고 KnowTBT 포털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파한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입수하고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WTO에 통보되지 않은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발굴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규제 적용 대상의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국제상품분류체계), 수출 규모, 국제표준 부합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별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과정에서는 규제의 세부 제·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계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애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애로가 발굴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 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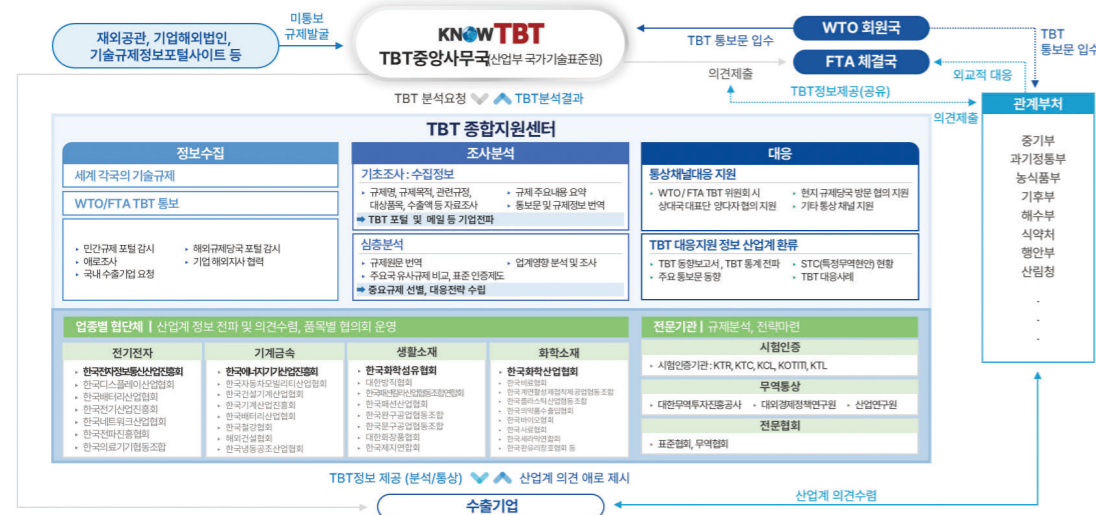
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국 TBT 질의처 및 현지 관련 부처에 공식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WTO/FTA TBT 위원회, 양자·다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TBT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및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림 1-2] TBT 대응 절차

국가기술표준원은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TBT종합지원센터는 KnowTBT포털을 통해 WTO TBT 통보문 및 미통보문을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수요와 애로를 수렴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TIT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기술규제를 심층분석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기술 규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제고와 애로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3] TBT 대응 체계

[표 1-2] TBT 대응 절차 예시



### 실시간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

KnowTBT 포털(www.knowtbt.kr)은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주기 종합 정보 포털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를 국가·품목·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이 운영되고 있다. 포털에서는 해외기술규제 기존 정보와 시행 예정 및 시행 중 규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KnowTBT 포털은 무역기술장벽 동향보고서, 기업 애로해소 사례집, 해외기술규제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국가·품목 분야를 설정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 등록 알림 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 최신 규제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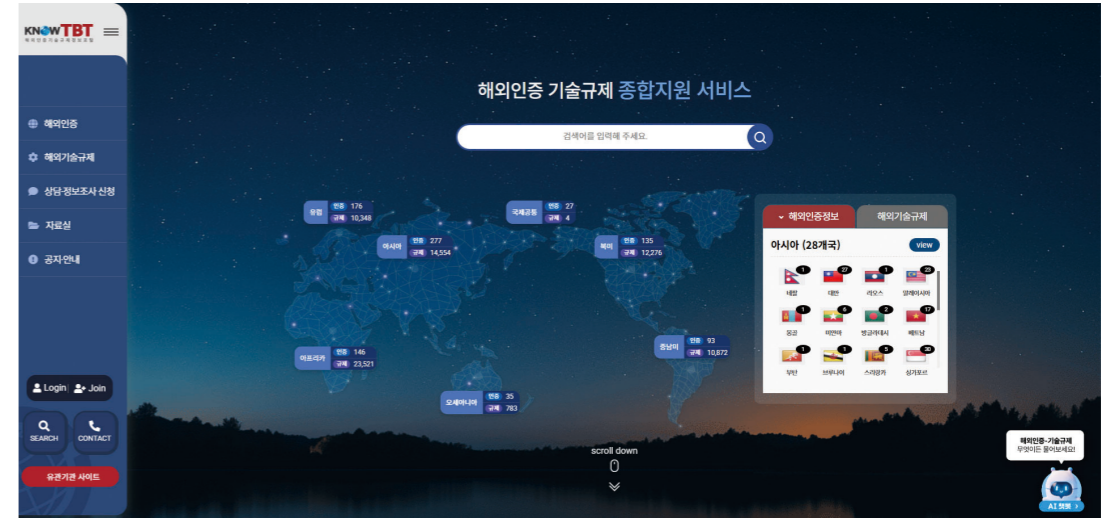


[그림 1-4] 새로운 TBT 등록 알림 메일

아울러, KnowTBT 포털은 해외기술규제와 관련한 기업 애로접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담당자는 포털을 통해 애로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KnowTBT 포털 개편

2025년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정보 제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KnowTBT 포털과 해외인증지원단 포털을 통합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포털 명칭을 기존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에서 '해외인증 기술규제정보포털'로 변경하여, 해외기술규제 정보와 해외인증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재정립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정보와 해외인증지원단 포털이 보유한 국가·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인증 절차 및 상담 진행 현황을 하나의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5] KnowTBT 포털 메인화면(개편)

통합 개편 과정에서 메뉴 구조와 주요 화면을 사용자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정보 탐색의 흐름을 개선하고, 해외기술규제 정보와 해외인증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환경으로 고도화 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 담당자는 해외기술규제 정보 확인부터 해외인증 정보, 컨설팅 신청까지 하나의 포털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5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PART. 2

## TBT 대응 사례 및 성과

1. TBT 대응 및 애로해소 사례
2. 기업의 TBT 대응 전략 및 성과

# 01 TBT 대응 및 애로해소 사례

2025년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 질의처, 양자협의, FTA TBT 위원회 및 민간 채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총 164건을 해소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철강 원자재 인증 의무화 조치와 관련하여 일관제철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호주의 DBDPE 함유 제품 수입·제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대응 지원체계를 통해 2025년 WTO 회원국에 통보된 5,206건의 TBT 통보문을 모니터링하고, C2P(유료 규제정보 사이트), 규제당국 홈페이지, 해외 시험·인증기관 웹사이트, KOTRA 해외 지사, 해외 기업법인 등을 통해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 6,962건을 발굴하였다.

이와 같이 입수된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후, 중요도가 큰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협·단체를 통해 산업계에 전파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특정무역현안 및 양자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TBT 회원국 질의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기업의 애로해소가 시급한 경우에는 FTA TBT 위원회 및 민간 채널을 활용해 협상하거나,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주로 호소하는 TBT 애로유형은 크게 과도한 규제, 불명확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정보부족, 인증지연으로 구분되며, 애로유형별 내용 및 사례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TBT 애로유형별 내용 및 사례

No.	TBT 애로유형	애로내용 및 사례
1	과도한 규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대용량 에어컨 시험방법 개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용 모델 출시가 필요하여 수출에 차질 발생
2	불명확한 규제	발표된 규제내용에 시험방법 및 인증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례: 칠레는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능이 포함된 가정용 기기에 대해 스위치용 표준을 적용하여 이중 시험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수출기업에 부담 발생
3	급박한 시행일	규제 발표와 시행일 사이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규제 도입을 발표하지 않고 시행하여 수출이 급히 중단되는 경우 사례: 쿠웨이트는 냉장·냉동고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자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제품 등록이 불가하여 규제 시행 전 규제 준수가 어려움
4	정보부족	규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발표되지 않았거나,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 파악이 어려워 기업이 규제 대응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특정 유해물질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금지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규제 시행일이 불명확하여, 대응 방안 수립이 어려움
5	인증지연	일부 국가 시험·인증기관의 업무 중단 등으로 인증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례: 인도의 폴리프로필렌(PP) 제품 BIS 인증 관련 공장심사 일정 미정 및 유예기간 부족으로 인해 규제 시행 전 인증취득이 불투명

TBT 해소유형은 정보제공, 유권해석, 규제개선, 시행유예로 구분되며 정보제공과 유권해석의 차이는 규정·절차에 대한 기존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인지,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해석하는지에 있다. [표 II-2]는 2025년 수출기업의 TBT 애로해소 규제 목록, [표 II-3]은 애로해소를 위해 협의 중인 규제 목록이다.

[표 II -2] 2025년 수출기업 TBT 애로해소 규제 목록

번호	국가	규제	애로유형	해소유형
1	남아프리카 공화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면제 신청 공지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2	뉴질랜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제한 도입(UV-328 금지)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3	대만	수소불화탄소 관리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4		재활용 표시 대상 제품 또는 용기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부족	정보제공
5	러시아	제품 식별 표시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6	말라위	살충제 처리 모기장 관련 기술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7	말레이시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관리 지침	정보부족	정보제공
8		전기 장비 승인 지침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9	몰디브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10	미국	메인주 과불화화합물(PFAS) 물질 함유 제품 금지법안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11	베트남	베트남 표준 및 기술규정법 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12		식품 곰팡이독소 최대 허용치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13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규정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4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자동차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15	싱가포르	환경보호 관리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16	아랍에미리트	자동 차량 중량 계측장치 계속 요건 기술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17	영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개정 규정(SI 2025/296)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개정 규정(SI 2025/297)	정보부족	정보제공
19	우즈베키스탄	전기제품 적합성 인증 절차 강화 조치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0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필수 라벨 표시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21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22	우크라이나	화학제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23	유럽연합	기계류 지침	정보부족	정보제공
24		고용점 땀납의 납 면제 관련 지침	정보부족	정보제공
25		스마트폰 및 태블릿 대상 에너지 라벨링 규정	불명확한 규제	규제개선
26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27		유리 및 세라믹 부품의 납 면제 관련 지침	정보부족	정보제공
2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EU 2019/1021)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29		유해물질 제한(RoHS) 부속서 III(고온용납 납 예외 추가)	정보부족	정보제공
30		휴대전화, 무선전화 및 태블릿 대상 에코디자인 규정	과도한 규제	정보제공
31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32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 규정(ESPR)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33	AI 법(AI Act)	정보부족	정보제공	
34	이스라엘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과도한 규제	유권해석
35		식품 접촉 플라스틱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36		회전식 건조기 에너지 효율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번호	국가	규제	애로유형	해소유형
37	이집트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소비량 측정에 대한 표준	정보부족	정보제공
38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셀 성능시험 기준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39	인도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전기제품 안전 품질관리 명령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40		기계 및 전기 장비 안전(옵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	정보부족	정보제공
41		텔레비전 내장 셋톱박스에 대한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42		철강 및 철강 제품 품질관리 명령(1차)	인증지연	정보제공
43		철강 및 철강 제품 품질관리 명령(2차)	인증지연	정보제공
44		철강 및 철강 제품 품질관리 명령(철강 원자재)	과도한 규제	시행유예
45		미인증 철강 제품에 대한 이의 없음 증명서(NOC) 발급 요건	인증지연	정보제공
46		틀루엔 품질관리 명령(1차)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47		틀루엔 품질관리 명령(2차)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48		인도 표준국 적합성 평가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49	BIS 규정 및 품질관리 명령(QCO) 인증 페널티 규정	정보부족	정보제공	
50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안전규격	정보부족	정보제공	
51	폴리프로필렌(PP) 제품 BIS 인증	인증지연	시행유예	
52	хин지(경첩) BIS 인증	급박한 시행일	유권해석	
53	DTV 위성튜너 BIS 인증	정보부족	정보제공	
54	하이브리드형 셋톱박스에 대한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55	인도네시아	가전제품 Safety SNI 인증 규정(1차)	정보부족	정보제공
56		가전제품 Safety SNI 인증 규정(2차)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57		식품 1차 포장재 제조용 종이·판지 SNI 인증	정보부족	정보제공
58	일본	열연, 냉연, 도금 제품 신SNI 인증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59		해외 할랄 인증 등록 서비스 시행 절차 시행령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60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61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관리지침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62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63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2차)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64	캐나다	환경 보호법 내 플라스틱 제품 등록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65	케냐	환경 관리 및 조정(오존층 파괴물질 거래 제한) 규정	불명확한 규제	유권해석
66	콜롬비아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인증 요건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67	쿠웨이트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68		온수기 에너지 성능 및 라벨링 규정	불명확한 규제	정보제공
69	태국	자외선 살균(UVC) 기능 적용 제품 안전 규정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70	호주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 브롬계 난연제) 함유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규정	과도한 규제	시행유예

[표 II-3] 2025년 수출기업 TBT 애로해소를 위해 협의 중인 규제 목록

번호	국가	규제	애로유형
1	노르웨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	정보부족
2	멕시코	순환경제법	정보부족
3	몰도바	전기·전자장비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술 규정	정보부족
4	미국	패션 산업의 환경적 책임 확립 하원 법안	정보부족
5		자발적 지속가능 의류 라벨링 법	급박한 시행일
6		과불화화합물(PFAS) 음용수 기준	정보부족
7		콜로라도주 가스 연소 스토브 라벨링 규정	정보부족
8	베트남	휴대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정보통신장비 전기안전 규정	과도한 규제
9	벨리즈	에어컨의 에너지 라벨링 및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불명확한 규제
10	브라질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제한(RoHS) 규정	불명확한 규제
11	사우디아라비아	기계 안전의 일반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12		전기·전자장비의 유해물질 규제 기술 규정	과도한 규제
13	싱가포르	환경보호 관리법	불명확한 규제
14	아랍에미리트	지상파 라디오 수신기 규격 UAE/GCC 기술 규정	정보부족
15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소비기기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1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필수 라벨 표시 요구사항	정보부족
17		저전압 장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급박한 시행일
18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19	우크라이나	기계류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20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과도한 규제
21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불명확한 규제
22	이라크	담배 및 전기·전자제품 품질마크 제도	과도한 규제
23		신규 자동차 적합성 평가 및 추가 라벨링 요건	불명확한 규제
24	이집트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셀 성능시험 기술 규정	불명확한 규제

번호	국가	규제	애로유형
25	인도	기계 및 전기 장비 안전 기술 규정(오니버스 기술 규정)	정보부족
26		에너지 효율국(가전제품 라벨링) 규정	불명확한 규제
27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	급박한 시행일
28		저전력 단거리 송신 장비에 대한 표준	불명확한 규제
29		철강 및 철강제품 품질관리 명령(철강 원자재)	과도한 규제
30		철강 및 철강제품 품질관리 명령	인증지연
31		통신용 실외 방수 캐비닛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불명확한 규제
32		필기 및 인쇄용지, 코팅지 및 판지 품질관리 명령	정보부족
33		가전제품 Safety SNI 인증 규정	인증지연
34		인도네시아	식품 1차 포장재 제조용 종이·판지 SNI 인증 규정
35	식품 접촉 재료 및 포장재 규정		불명확한 규제
36	비도로 엔진 배출 규정		정보부족
37	중국	보조배터리 및 완구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기술 기준	과도한 규제
38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급박한 시행일
39		소독된 식기류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기준	불명확한 규제
40	케냐	어업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라벨링 요구사항 (DARS AES 02:2025)	불명확한 규제

본 파트에서는 2025년 국가기술표준원이 대응한 TBT 대응 사례 중 대표 애로 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한다.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유럽연합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해소유형: 유권해석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규제명	F-GAS 제한 규정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화 온실가스(F-Gas)에 대한 단계적 감축 규정 및 특정 제품군에 대한 시장 출시 제한 제도 도입</li> <li>• 저온난화지수(GWP) 냉매인 HFC-1234yf가 적용 대상 물질로 포함</li> </ul>
시행일(예정)	규정 채택 후 단계적 적용(제품군별 상이)
통보일자	2023. 11. 9. (EU/1031)
HS 코드	8415(에어컨), 8418(냉장·냉동고), 8703(자동차)
수출액(만 불)	835,150(2024년), 965,705(2025년)

EU F-Gas 규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저온난화 냉매(HFC-1234yf)가 단계적 감축 및 시장 출시 쿼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기업의 수출이 불확실해졌었다. 이에 WTO TBT 위원회 및 한-EU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적용 범위 대상이 아님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EU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이력

- » 2023년 11월: EU F-GAS 규정 WTO TBT 통보
- » 2024년 2월: EU F-GAS 규정 최종안 관보 게재
- » 2024년 3월: EU F-GAS 규정 최종안 발효
- » 2024년 3월: EU F-GAS 규정 최종안 시행

### 기업 애로사항

- » 저온난화 냉매(HFC-1234yf)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체 기술 부재로 규제 준수가 어려움
- » PFAS 규제와 F-GAS 규정 간 관계가 불명확하여 전략 수립이 어려움

### 대응활동 및 결과

- » 2024~2025년 WTO TBT 위원회(STC, 양자회의)에서 지속 제기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HFC-1234yf의 F-GAS 규제 적용 근거 및 시장 출시 쿼터 적용 여부 질의
  - ▶ 유럽연합 측 답변 ① HFC-1234yf는 단계적 감축 및 시장 출시 쿼터 적용 대상이 아님을 공식 확인
- » 이를 통해 적용 대상에 대한 EU의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2025. 3. 26.)

### 수출효과

- » 약 965,705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EU 자동차·전자제품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인도

### 철강 및 철강 제품 품질관리 명령

해소유형: 규제개선, 시행유예

인도가 철강 원자재에 대해 BIS 인증 의무화를 WTO 사전 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중단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TBT 질의처 공식서한 및 양자 협의를 통해 일관제철소 제품의 규제 적용 면제와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고, 인도 측의 적극 검토 의사를 공식 확인받아 수출 중단 우려를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규제명	철강 및 철강 제품 품질관리 명령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원자재에 대해 BIS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li> <li>• WTO 사전 통보 없이 규제가 공표되었으며, 공표 즉시 시행</li> </ul>
시행일(예정)	2025. 6. 16. 시행
통보일자	미통보(2025-2920)
HS 코드	72(철강), 73(철강제품)
수출액(만불)	277,914(2024년), 275,641(2025년)

#### 규제 이력

- » 2025년 6월 13일: 철강 및 철강 원자재 BIS 인증 의무화 조치 발표
- » 2025년 6월 16일: 철강 및 철강 원자재 BIS 인증 의무화 시행

#### 기업 애로사항

- » WTO 사전 통보 없이 규제가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인증 준비 및 시험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일관제철소 제품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 중단 우려

#### 대응활동 및 결과

- » TBT센터-한국철강협회 공동 민간서한 송부(2025. 6. 25.)
- » WTO TBT 질의처에 공식 서한을 송부하여 일관제철소 제외 및 최소 1년 유예기간 요청(2025. 6. 20. / 2025. 6. 25.)
- » WTO TBT 제2차 위원회 계기 한-인도 양자 협의 추진(2025. 6. 26.)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일관제철소 제품 규제 적용 면제 및 시행유예 요청
  - ▶ 인도 측 답변 ① 일관제철소 제품 규제 적용 면제 및 시행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
- » 이를 통해, 규제의 즉시 시행 인한 수출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일관제철소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2025. 8. 12.)

#### 수출효과

- » 약 275,641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인도 철강 원자재 수출에 대해 일관제철소 제품 규제 적용 면제 및 시행유예 검토를 통해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베트남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규정

해소유형: 규제개선

베트남이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 과도한 성능 시험을 포함한 시험-인증 규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기간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에 WTO TBT 공식 질의 및 한-베 FTA TBT 협의를 통해 성능 시험 요건 삭제를 이끌어내어 안전 시험만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베트남 과학기술부 (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규제명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규정
규제내용	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과도한 시험-인증 요구
시행일(예정)	2026. 1. 1.
통보일자	2025. 2. 13. (VNM/337)
HS 코드	8507.60(리튬이온 축전지)
수출액(만불)	37,631(2024년), 15,857(2025년)

### 규제 이력

» 2025년 2월: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규제 개정 초안 WTO TBT 통보

### 기업 애로사항

»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한 성능 시험 요구 및 시험 항목 확대로 인해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최종 개정안 발표 시점이 불확실해 규제 대응 일정 수립에 제약

### 대응활동 및 결과

» WTO TBT 공식서한을 송부하고 STC를 제기하였으며, 한-베 FTA TBT 협의를 통해 성능시험 요건 삭제 및 최종안 발표 일정 확인을 요청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성능 시험 요건 삭제 요청  
② 최종안 발표 일정 확인 요청
- ▶ 베트남 측 답변 ① 비용 부담이 큰 성능 시험 요건을 삭제  
② 성능 시험 삭제 개정안 11월 중 최종 발표 예정

»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험 항목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기간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환경을 개선함(2025. 11. 18.)

### 수출효과

» 약 15,857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베트남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수출에 대해 과도한 성능시험 요구로 인한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콜롬비아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인증 요건

해소유형: 규제개선

콜롬비아의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인증 규제가 UN 규정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아, 국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도 추가 개발 및 인증 부담이 발생하였다. WTO TBT 공식서한을 통해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요청한 결과, 콜롬비아 측은 UN 규정과의 차량 카테고리 조화를 수용하고 이를 법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을 공식 확인하여,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콜롬비아 교통부 (Ministerio de Transporte)
규제명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인증 요건
규제내용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 대해 콜롬비아 자체 인증 기준 적용
시행일(예정)	브레이크: 2025. 9. 16. 타이어: 2025. 9. 30.
통보일자	타이어: 2021. 10. 13. (COL/251) / 2025. 11. 17. (COL/251/Add.7) 브레이크: 2022. 4. 7. (COL/254) / 2025. 9. 1. (COL/254/Add.4)
HS 코드	4011(고무 타이어), 8703(승용차), 8708(자동차 부품)
수출액(만불)	30,912(2024년), 64,137(2025년)

### 규제 이력

- » 2021년 10월: 타이어 인증 강제화 규제 초안 통보 이후 현재까지 시행 연기 중
- » 2022년 4월: 브레이크 인증 강제화 규제 초안 통보
- » 2025년 9월: 브레이크 인증 강제화 규제 초안 시행 중지

### 기업 애로사항

- »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추가 개발·인증에 따른 비용·기간 부담이 증가

### 대응활동 및 결과

- » 국제표준인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규정과 부합화 요청하는 WTO TBT 공식 서한 송부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N1 차량에 대해 UN Regulation No.30(타이어) 및 No.13(브레이크)과의 부합화 요청
  - ▶ 콜롬비아 측 답변 ① UN 규정과의 차량 카테고리 조화를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발행될 법규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
- » 콜롬비아의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인증 규제가 국제표준과 조화될 예정임이 확인되어, 국내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추가 개발·중복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함(2025. 7. 21.)

### 수출효과

- » 약 64,137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콜롬비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UN 규정 미부합으로 인한 추가 개발·인증 부담 및 수출 차질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쿠웨이트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

해소유형: 규제개선

쿠웨이트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에 동일한 일련번호를 제품과 포장에 모두 부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진 국내 가전기업의 제조·포장 공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민간 서한을 통해 포장에는 일련번호 없는 라벨 부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 규제 개요

<b>담당부처</b>	쿠웨이트 산업청 (PAI: Public Authority for Industry)
<b>규제명</b>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세탁기·건조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
<b>규제내용</b>	에너지 효율 라벨에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제품 본체와 포장에 동일한 일련번호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
<b>시행일(예정)</b>	2024. 10. 8.
<b>통보일자</b>	에어컨: 2018. 10. 18. (KWT/439) 세탁기: 2022.11. 25. (KWT/608) 건조기: 2022.12.1. (KWT/609) 냉장고: 2022.12.14. (KWT/628)
<b>HS 코드</b>	8415(에어컨), 8418(냉장고 및 냉동고), 8450(세탁기), 8451(건조기)
<b>수출액(만불)</b>	399(2024년), 375(2025년)

### 규제 이력

- » 2018년 10월 18일: 에어컨에 대한 라벨링 규제 통보
- » 2022년 11월 25일: 세탁기에 대한 라벨링 규제 통보
- » 2022년 12월 1일: 건조기에 대한 라벨링 규제 통보
- » 2022년 12월 14일: 냉장고에 대한 라벨링 규제 통보

### 기업 애로사항

- » 제품과 포장에 동일한 일련번호 라벨 부착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인 일련번호 발급 방식으로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

### 대응활동 및 결과

- » 대표 협회(KEA)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민간 서한을 두 차례 송부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에너지 효율 라벨 내 시리얼 넘버 표기 의무 삭제 요청
  - ▶ 쿠웨이트 측 답변 ① 일련번호가 없는 에너지효율 라벨은 포장에 부착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명확화
- » 포장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 가능함이 확인되어, 국내 가전기업의 대량 생산·포장 공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라벨 부착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2025. 9. 16.)

### 수출효과

- » 약 375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쿠웨이트 가전제품 수출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 일련번호 표기 방식의 불확실성 해소로 수출 차질 우려 완화

애로유형 ①  
과도한  
규제



## 호주

### DBDPE 함유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규정

해소유형: 시행유예

호주가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 브롬계 난연제)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 제한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단기 적용 시 국내 기업 부담이 우려되었으나 우리 정부는 WTO TBT 위원회(STC) 및 양자 협의를 통해 시행유예 확대와 적용 범위 명확화를 요청한 결과, 필수 용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고 적용 범위가 명확화되어 수출 중단 및 공급망 전환 부담이 완화되었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호주 환경·기후변화·에너지·수자원부  
(DCCEEW: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규제명** DBDPE 함유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규정

**규제내용** ①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 브롬계 난연제) ②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을 함유한 부품 및 완제품을 수입, 제조,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하는 산업 화학 환경 관리 표준(IChEMS)에 추가할 것을 발표함

**시행일(예정)** 2027. 1. 1.

**통보일자** 2025. 5. 8. (AUS/181)

**HS 코드** 전 제품

**수출액(만불)** 1,559,717(2024년), 1,417,242(2025년)

#### 규제 이력

» 2025년 5월: DBDPE 규제 초안 WTO TBT 통보

#### 기업 애로사항

» 대체재 개발 및 제품 적용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단기간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필수 용도 유예 적용 시 대체 불가 입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세부 규정이 불명확

#### 대응활동 및 결과

» 규제 명확화와 시행 일정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WTO TBT 공식 서한을 송부, WTO TBT 위원회(STC) 제기 및 양자협약 추진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대체 가능성 입증 기준·절차, 적용 범위 등 명확화  
② 대체재 개발 여건을 고려한 시행유예 확대
- ▶ 호주 측 답변 ① 건설기계, 의료기기 분야 등 필수 용도 분야 확대하고, 대체 불가에 대한 별도 입증 불필요  
② 단계적 적용 기한을 10년으로 연장

» 대체재 전환이 어려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필수 용도 제품 범위 확대와 시행유예를 이끌어내어, 호주 수출 중단 및 공급망 전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함(2025. 6. 27.)

#### 수출효과

» 약 1,417,242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호주 DBDPE 관련 제품 수출에 대해 단기간 규제 시행으로 인한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②  
불명확한  
규제



## 유럽연합

### 스마트폰 및 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정

해소유형: 유권해석, 규제개선

EU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배터리 사용 시간 측정에 적용되는 시험 조건과 파라미터가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WTO TBT 위원회 계기 한-EU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시험 조건 및 측정 파라미터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공식 확인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DG GROW)
규제명	스마트폰 및 태블릿 대상 에너지 라벨링 규정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에너지 라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li> <li>배터리 사용시간 측정을 위해 네트워크 기반 시험 방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 라벨에 반영하도록 규정</li> </ul>
시행일(예정)	2023. 9. 20. 발효 / 2025. 6. 20. 시행
통보일자	미통보(2024-1442)
HS 코드	8517(전화기, 유선·무선 통신망 기기)
수출액(만불)	192,201(2024년), 148,109(2025년)

#### 규제 이력

- » 2022년 9월: 스마트폰·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제 WTO TBT 통보
- » 2023년 8월: 스마트폰·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제 EU 관보 고시
- » 2023년 9월: 스마트폰·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제 발효
- » 2025년 6월: 스마트폰·태블릿 에너지 라벨링 규제 시행

#### 기업 애로사항

- » 배터리 사용 시간 시험 조건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기업별 측정 결과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응활동 및 결과

- » WTO TBT 제3차 위원회 계기 한-EU 양자 협의 추진(2025. 11. 12.)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배터리 사용시간 네트워크 측정 조건 및 시험 파라미터 명확화 요청 및 실제 측정 편차를 고려한 허용오차 설정 조정 요청
  - ▶ 유럽연합 측 답변 ① 규정에서 시험 파라미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파라미터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
- » 이를 통해 시험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 시험 설계가 가능하도록 규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2025. 11. 12.)

#### 수출효과

- » 약 148,109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EU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②  
불명확한  
규제



## 중국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해소유형: 정보제공, 유권해석

중국이 전기·전자제품 대상 RoHS 규제 강화 과정에서 이중 기준 적용기간의 준수 기준과 QR 코드 표시 인정 범위 등이 불명확해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간 서한을 통해 대응하였고, 10종 유해물질 규제 적용 기준과 QR 코드·URL 기반 표시 허용에 대한 공식 해석을 확보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규제명	전기 및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표시 의무 부과</li> <li>기존 6종 외 프탈레이트 4종을 포함한 총 10종 유해물질 제한 확대</li> </ul>
시행일(예정)	2027. 8. 1.
통보일자	2024. 12. 20. (CHN/1952) 미통보(2025-1704, 2025-3155, 2025-6216)
HS 코드	84(보일러), 85(전기기기)
수출액(만불)	7,676,178(2024년), 7,659,102(2025년)

### 규제 이력

- » 2024년 11월: 중국 RoHS 통합 규정 초안 미통보 발표
- » 2024년 12월: 중국 RoHS 통합 규정 초안 WTO TBT 통보
- » 2025년 3월: 중국 RoHS 개정 초안 미통보 발표
- » 2025년 8월: 중국 RoHS 최종안 미통보 발표

### 기업 애로사항

- » 권고표준과 국가강제표준 간 시행 시점 차이로 중복 적용 기간이 발생하여, 강제성 여부 및 QR 코드 활용 표시 방식 인정 여부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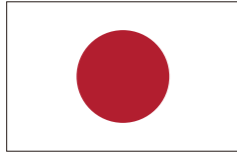
### 대응활동 및 결과

- » 대표 협회(KEA)를 통해 불명확한 규제 사항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민간 서한을 송부함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중복 적용 기간 중 법적 강제성 여부 명확화  
② QR 코드 활용 표시 방식 인정 여부 질의
  - ▶ 중국 측 답변 ①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제 준수 권고  
② QR 코드와 URL 제공 모두 허용
- » 규정의 시행 시기, 적용 범위 및 표시 방식에 대한 행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2025. 10. 28.)

### 수출효과

- » 약 7,659,102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중국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대해 RoHS 규제 적용 기준 및 표시 방식 불명확성 해소로 수출 중단 우려 해소

애로유형 ②  
불명확한  
규제



## 일본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

해소유형: 유권해석

일본이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규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기업은 제도 적용 여부와 대응 전략 수립에 혼선을 겪었다. 이에 민간 질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 인증제도임을 확인함으로써, 인증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일본 환경성 (Ministry of the Environment)
규제명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용기·제품을 대상으로 순환성 우수 설계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제시</li> <li>음료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기, 가정용 세제·화장품 용기, 문구류 제품 등 대상</li> </ul>
시행일(예정)	2026. 1. 24.
통보일자	2025. 7. 24. (JPN/863/Add.1)
HS 코드	3923(플라스틱 제품)
수출액(만불)	16,045(2024년), 16,015(2025년)

### 규제 이력

» 2025년 7월: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 규제 WTO TBT 통보

### 기업 애로사항

» 인증 기준의 법적 강제성 불명확으로 제재·패널티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발생

### 대응활동 및 결과

» 인증 의무 적용 여부와 패널티 부과 기준 명확화를 위해 민간 질의 서한 송부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플라스틱 순환성 우수 설계 인증 기준의 강제성 여부, 의무 적용 여부 및 패널티 부과 기준 명확화 요청
- ▶ 일본 측 답변 ① 음료용 PET 용기, 가정용 세제·화장품 용기 및 문구류 제품에 관한 기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 인증·인정 제도임

» 해당 기준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인증제도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인증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2025. 8. 13.)

### 수출효과

» 약 16,015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일본 플라스틱 용기·제품 수출에 대해 인증 기준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수출 차질 우려 완화

애로유형 ③  
급박한  
시행일



## 인도

###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전기제품 안전 품질관리 명령

해소유형: 시행유예

인도의 가정용·상업용 전기제품에 대해 안전 규제 도입으로 다수 품목에 대한 BIS 시험·인증이 단기간 내 요구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중단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TBT 질의처 공식서한 및 양자 협의를 통해 시행유예를 요청하였고, 인도 측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新 규정 도입 시 시행유예를 부여하여 기업의 단계적 대응 여건을 마련하였다.

#### 규제 개요

담당부처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규제명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전기제품 안전 품질관리 명령
규제내용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전기제품 전반에 대해 안전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85개 품목을 대상으로 BIS 시험·인증을 의무화
시행일(예정)	2026. 3. 19.
통보일자	2024. 5. 28. (IND/328) 미통보(2025-2120)
HS 코드	8414(진공펌프), 8417(오븐), 8419(물가열기), 8422(식기세척기) 등
수출액(만 불)	16,945(2024년), 17,717(2025년)

#### 규제 이력

- » 2024년 5월: 규정 초안 WTO TBT 통보
- » 2024년 9월: 규정 최종안 미통보 발표
- » 2025년 5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新 규정을 발표하여 시행유예를 부여함

#### 기업 애로사항

- » 다수 품목 동시 인증 요구로 시험·인증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인증 지연 시 인도 시장 출시 일정 차질 및 수출 중단 우려

#### 대응활동 및 결과

- » WTO TBT 질의처 공식 서한을 통해 인증 지연 문제와 규정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
  - ▶ 우리 측 요청사항 ① 인증 지연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및 시행 유예 요청
  - ▶ 인도 측 답변 ① 기존 규정 폐지 및 新 규정 도입 과정에서 규정 시행 유예 결정
- » 가정용·상업용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준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단계적 시장 대응이 가능(2025. 8. 12.)

#### 수출효과

- » 약 17,717만 불(2025년 기준) 규모의 對 인도 가정용·상업용 전기제품 수출에 대해 인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중단 우려 해소

# 02 기업의 TBT 대응 전략 및 성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산업 보호, 경제안보 제고, 공급망 확보 등을 목표로 기술규제,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가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수출 활동에 있어 대응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은 단순한 규제 요소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생산, 인증,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규제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인증 획득, 시험 대응, 규제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본 파트에서는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술규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TBT 우수대응사례 01

현대자동차 HYUNDAI

## 민관 협력 기반 전략적 대응으로 글로벌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다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대표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차량을 수출하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약 4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거점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차와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AI 기반 모빌리티,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GV60

### 호주 화학물질 규제가 불러온 공급망 전반의 위기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상이한 기술규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제조 과정에서는 안전성, 내구성, 품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수출 대상국의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환경·화학물질 규제 강화가 주요 기술규제 이슈로 대두되었다. 호주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체계인 IChEMS(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를 도입해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던 DBDPE (Decabromodiphenyl ethane)가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되었다.

문제는 완성차의 경우, 해당 물질이 내·외장재와 전장부품 등 다양한 부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동차 산업은 원재료, 부품, 모듈, 완성차로 이어지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여서, 규제 물질의 사용 여부를 단기간 내 전수 조사하고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서 동일 기준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 난도가 매우 높았다.

### 짧은 대응 기한 속 산업 전반을 흐든 기술규제

이번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제품이 아닌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일 기업이나 특정 부품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산업 전반은 물론 전기·전자, 건설,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 현대자동차 법규인증2팀 노성중 책임연구원은 의견 공청 기간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공급망 전반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당시의 일을 떠올렸다.

“공급망 전체에서 해당 물질의 사용 여부를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난연 성능은 차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없이 소재를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이번 이슈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술 검증, 품질 확보, 양산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로 작용했으며, 단기 대응 중심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 산업계 협력과 민관 대응으로 돌파구 마련

현대자동차는 단독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산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ACEA(유럽자동차공업협회),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BSEF(브룸과학환경포럼) 등 국내외 협회와 협력해 규제 영향성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국가 차원의 공식 의견으로 전달하고, 산업 전반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의견을 넘어 산업계 전체의 관점에서 규제 영향이 전달될 수 있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한 국가 간 공식 소통 채널은 기업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당국과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적·공급망 상의 제약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단일 이슈 대응을 넘어 향후 유사 규제 대응을 위한 기반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민관 협력 기반 대응의 결과, 호주 정부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 산업계의 기술적 현실과 공급망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응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호주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며, 연간 약 7만 대 규모의 판매를 지속해 온 주요 수출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유지 차원을 넘어, 현지 딜러망과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확보된 유예기간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대체 난연 소재 발굴, 기술 검증, 공급망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기간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단기적인 대응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공급망 기반 규제 대응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IMDS(국제재료데이터 시스템), GADSL(글로벌자동차선언물질목록) 등 글로벌 공통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유해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계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성중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산업과의 교차 영향성을 고려한 다각적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규제 대응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 대응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동일한 문제를 함께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가 향후 대응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산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BT 대응 Report**

- When 2023년~현재
- Where 호주
- What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체계(IChEMS)하에서 난연제 DBDPE 사용 제한 추진으로 완성차 부품 전반에 영향 발생
- How 산업계 협력 및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을 통한 의견 전달로 규제 유예기간 확대 반영

TBT 우수대응사례 02



## 넘기 어려운 규제 장벽, 협력으로 이룬 성과



롯데케미칼 대전연구소

롯데케미칼은 합성수지, 기초유분, 화성제품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화학기업으로, 지속적인 생산시설 확충과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생활용품, 자동차, 의료, 산업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리사이클 소재 등 미래 친환경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친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인도 톨루엔 규제가 초래한 수출 애로

롯데케미칼이 직면한 기술규제 이슈는 인도의 톨루엔 관련 BIS 규제였다. 인도는 연간 약 50만 톤 이상의 톨루엔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은 전체 수입 물량 중 약 34%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다. 롯데케미칼 역시 국내 주요 톨루엔 수출기업 중 하나로, 산업용 용제 및 기타 화학물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톨루엔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약 99.0% 수준의 저순도 톨루엔이다.

문제는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유통을 위한 톨루엔 제품 기준을 99.7% 이상의 고순도 제품으로 제한했다는 점이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인도 수출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기존에 공급해 오던 저순도 톨루엔의 수출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 현실과 괴리가 큰 규제에 가까웠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효율 특성상 고순도 톨루엔 제조는 어려우며, 전 세계적으로도 저순도 톨루엔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규제는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수출 구조 자체를 흔드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 수출 방안조차 찾기 어려웠던 불확실한 규제 환경

롯데케미칼은 고순도 톨루엔 강제인증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BIS 인증 관련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자사 톨루엔 제품의 수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도 당국 내부에서도 저순도 톨루엔의 향후 관리 방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수출을 위한 인증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롯데케미칼은 BIS 인증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로 문의하고 인도법인을 통해 현지 접촉도 시도했지만, 인도의 행정 특성상 개별 기업이 정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실질적인 답변을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규제는 롯데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산업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저순도 톨루엔 수출이 차단되면, 인도 산업용 용제 시장에서 불필요한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도는 자국 내 인프라 개발 정책인 Bharatmala와 스마트시티 정책



롯데케미칼 톨루엔 제품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등에 따라 저순도 톨루엔을 사용하는 산업용 용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규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인도 내부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인도 측의 관심과 대응은 제한적이었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 기한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 TBT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과의 협력 및 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화학산업협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인도향 톨루엔 수출과 관련된 애로가 예상되는 동종 석유화학 기업들을 모집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BIS 당국 및 WTO TBT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임박한 인증 기한의 1년 연장을 끌어냈다. 당초 인증 기한은 2024년 12월 22일이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 22일로 연장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또한 이 기간, 국가기술표준원은 유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BIS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톨루엔에 대한 강제 인증 자체가 철회되었다. 롯데케미칼 윤제훈 책임은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해외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그 결과를 공유해 준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직접 대산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노력을 약속한 점도 인상적인 지원으로 언급했다.

### 강제 인증 철회를 통한 실질적 성과

롯데케미칼은 시를 활용해 각국의 주요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컨설팅사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술규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와 대외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톨루엔 제품에 대한 BIS 강제 인증이 철회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톨루엔의 순도와 관계없이 인도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수준이 아니라, 동종 업계 전반의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도 시장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회복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개별 기업이 직접 접촉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국가별 규제가 점점 세분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실질적인 해결까지 연결해 주는 기능은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화학산업협회를 통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 TBT 대응 Report

- When** 2024~2025년
- Where** 인도
- What** 톨루엔 고순도(99.7% 이상) 기준 적용으로 저순도 톨루엔의 인도 수출 제한 발생
- How** 화학산업협회 및 동종 기업들과의 공동 대응,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의 공식 협의를 통해 인증 기한 1년 연장 후 최종 강제 인증 철회

TBT 우수대응사례 03

LG전자 LG전자

## 불확실성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협력으로 대응의 길을 찾다



LG전자 Life's Good 활동 광고(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LG전자는 '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해 온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HS(Home Appliance Solution),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 VS(Vehicle Solution), ES(Eco Solution) 등 주요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가전, IT, 전장부품, 사이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30여 개 사업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RoHS 규제가 불러온 수출 차질 우려

LG전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입된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규제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해당 규제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10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적합성평가,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규제 시행 일정과 요건이 산업계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2025년 8월 규제 발표 이후 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했으며, 인증 절차와 제출 서류, 평가 기준 등 핵심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글로벌 표준으로 활용되는 EU RoHS와 달리 예외조항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존 대응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와 인증 대응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 불명확한 기준과 소통 부재가 만든 대응 한계

이번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요건의 불명확성과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응 일정이었다. 규제 세부 기준과 인증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일정만 제시되면서, 기업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규제기관과의 공식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질의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정보 부족과 소통 한계가 결합된 복합적인 리스크로 작용했다.



Media Entertainment Solution 사업본부 주요 제품

LG전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TBT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 국내 협·단체와 협력하고, 러시아 유럽기업협회(AEB), 중국가전협회(CHEAA) 등 해외 협회와의 글로벌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현지 법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규제기관과 직접 접촉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규제 유예 검토와 관련된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양자회의 및 후속 대응회의를 통해 규제 요건의 명확화와 시행 유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정부 차원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은 규제 연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규제 시행 연기로 수출 리스크 해소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대응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당초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규제를 12개월 연기하여 2027년 2월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규제 미준수로 인한 제품 통관 지연 및 판매 중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지에서의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확보된 기간 동안 규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내부 대응 전략과 인증 대응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용하였다.



Vehicle Solution 사업본부 주요 제품

LG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본사, 사업본부, 해외법인을 연결하는 3각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규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전사 협의체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규 규제 발생 시 개발, 품질, 서비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해 시스템 기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 LG전자는 규제 기관과의 선제적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규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TBT 대응 Report

- When** 2025~2026년
- Where** 우즈베키스탄
- What** 전기·전자제품 대상 RoHS 규제 도입(유해물질 제한, 적합성 평가 의무화) 및 불명확한 인증 절차와 촉박한 시행 일정으로 수출 리스크 발생
- How** 산업계 협력 및 국가기술표준원(TBT 사무국)과의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규제 시행 12개월 연기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PART. 3

## WTO TBT 통보문 및 STC 동향

- 
1. WTO TBT 통보문 동향
  2. WTO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 01 WTO TBT 통보문 동향

II

2025년 WTO TBT 통보 건수는 총 5,206건으로, 1995년 WTO TBT 협정 출범 이후 가장 많은 통보 건수를 기록 하였으며, 전년 대비 20.1% 증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등)의 통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TBT 통보 중 신규 통보는 2,879건으로 전체 통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 분야별 신규 통보는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농수산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보 목적은 품질요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등이었으며, 신규 및 개정 통보에 대한 평균 의견수렴 기간은 58.2일로 나타났다.



이 파트는 WTO TBT 연례보고서(31st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G/TBT/61))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전문은 WTO 웹사이트<sup>1)</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1월 WTO가 공식 출범하고, WTO 협정의 부속서 1A에 포함된 TBT 협정이 발효되었다. TBT 협정 제10조 6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하는 경우 이를 TBT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제2조 9항에서는 기술규제가 타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에 TBT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회원국 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회원국 간의 의견 교환 사항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부른다.

1) WTO 웹 사이트(<https://www.wto.org>)

특히, WTO TBT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ST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화학물질, 디지털, 라벨링 요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TBT 협정에 따른 통보는 각국의 정당한 정책 목표인 국민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 동식물의 생명·건강 및 환경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기술조치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 WTO TBT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기반으로 전체 통보문과 신규 통보문에 대한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동향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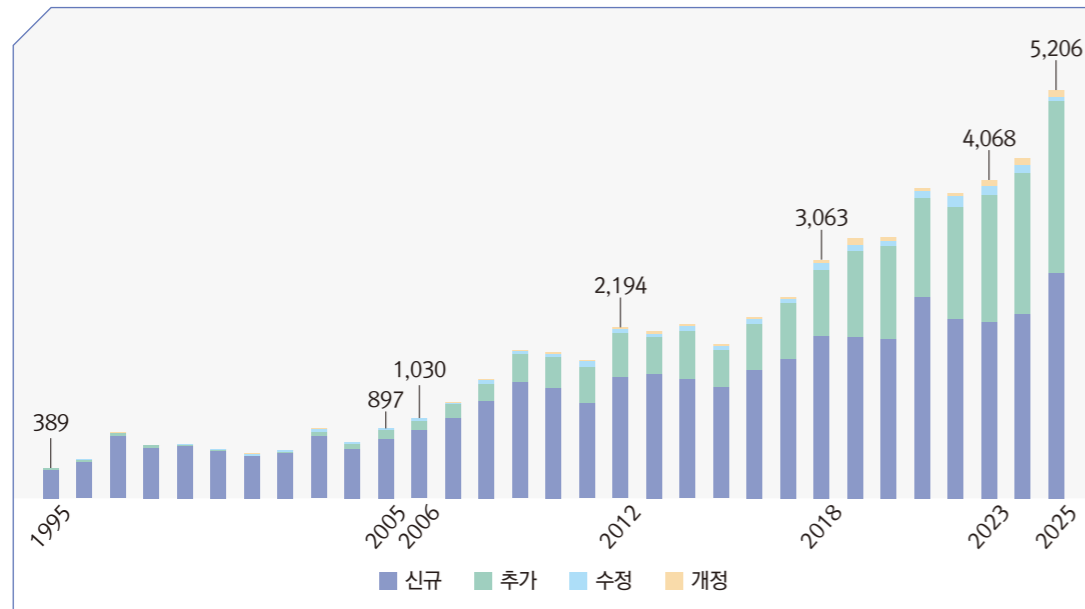
본 파트에서는 WTO TBT 통보 및 TBT 위원회를 통한 STC 제기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해외 기술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연도별 통보 동향

[그림 III-1]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간 총 6만 1,446건의 기술규제가 166개 WTO 회원국에 의해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4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5년 897건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6년 1,030건, 2012년 2,194건, 2018년 3,063건, 2023년 4,068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5,206건으로 집계되어 WTO TBT 협정 출범 이후 가장 많은 통보 건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5년 대비 2025년 통보 건수는 약 13배 증가하였고, 최근 2년간 1천 건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 연도별 통보문 발행 건수

## 최근 5개년 통보 동향

최근 5개년(2021~2025)의 통보 건수는 [표 III-1]과 같다. 2025년 TBT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1%(872건) 증가했다. 2025년 통보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통보문 2,879건, 추가 통보문 2,187건, 수정 통보문 43건, 개정 통보문 97건이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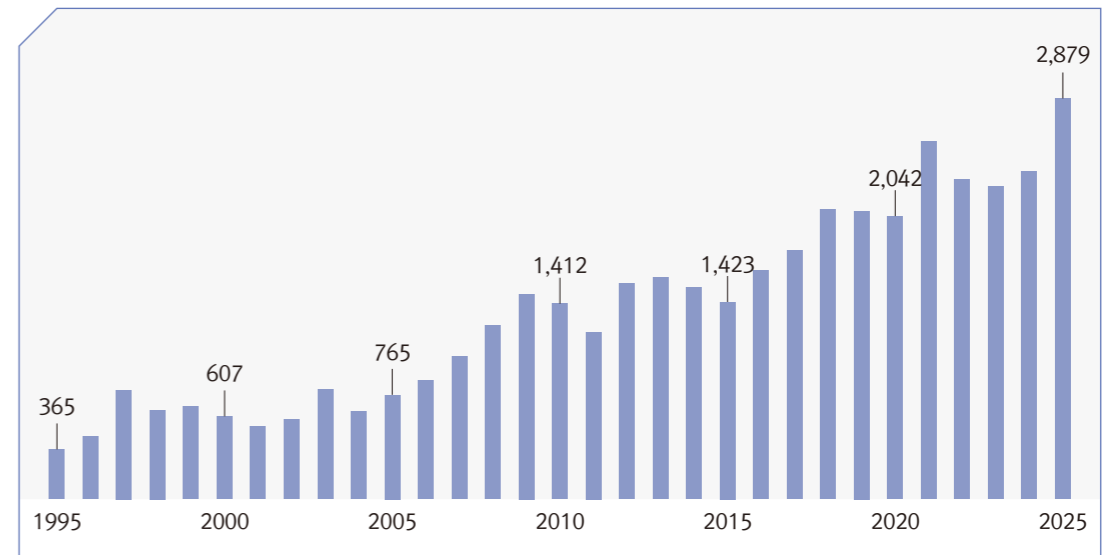
[표 III-1] 최근 5개년 통보문 유형별 발행 건수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Regular)	2,579	2,299	2,260	2,356	2,879
추가(Addenda)	1,246	1,418	1,616	1,800	2,187
수정(Corrigenda)	93	135	108	106	43
개정(Revisions)	42	45	84	72	97
합계	3,960	3,897	4,068	4,334	5,206

- 1) 신규 통보문: 기술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 2) 추가 통보문: 최초 통보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수정 통보문: 최초 통보문 내용의 변경 없이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4) 개정 통보문: 통보된 기술규제(안)의 채택 또는 시행 전 규제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연도별 신규 통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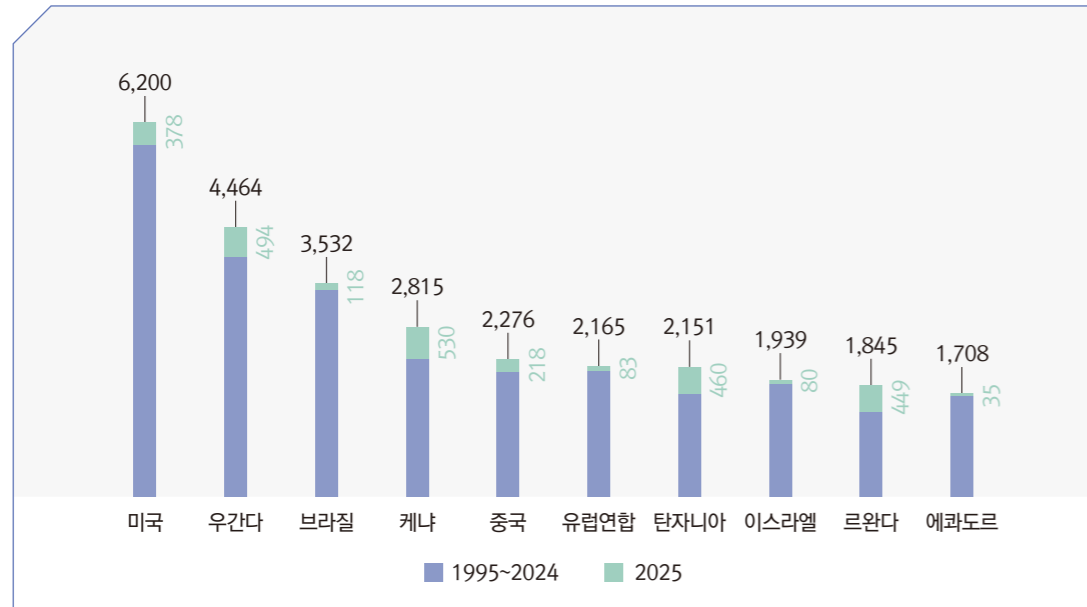
WTO 회원국은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통보문(Regular Notification) 형태로 이를 알리며, 이 통보문은 새로운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III-2]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일시적 급증 이후에도 증가 흐름이 지속되어 2025년에는 연간 기준 최다건수를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22.2%(523건) 증가하였다.



[그림 III-2] 연도별 신규 통보문 발행 건수

### 국가별 누적 통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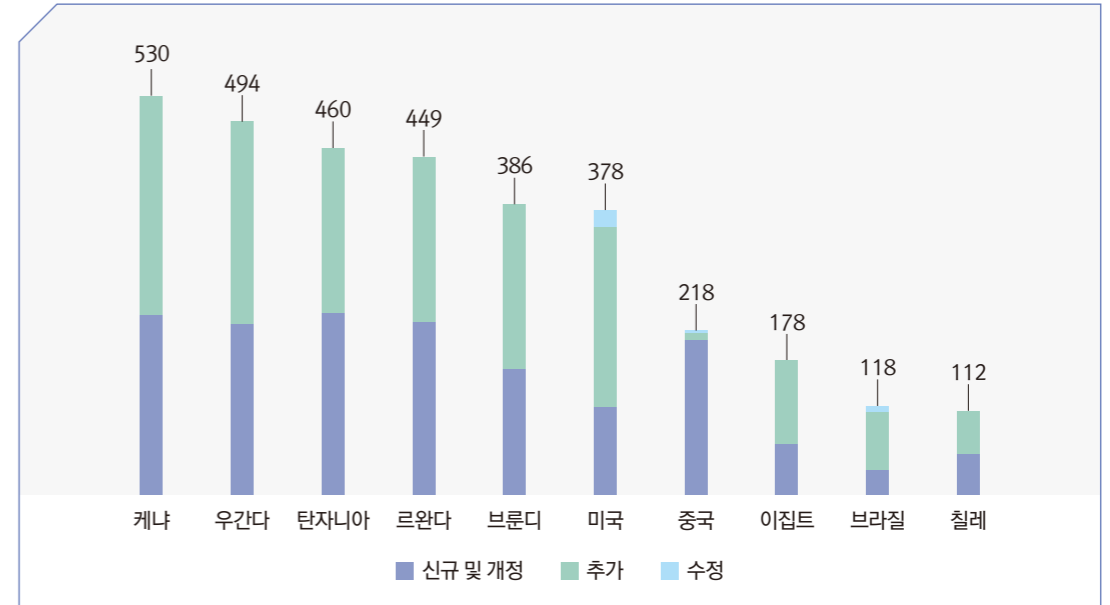
[그림 III-3]과 같이 전체 누적(1995~2025)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통보문(6,200건)을 제출했으며 우간다(4,464건), 브라질(3,532건), 케냐(2,815건), 중국(2,276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25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 속해있는 케냐(530건), 우간다(494건), 탄자니아(460건) 등 주요 3개국이 총 1,484건의 TBT 통보문을 발행하였다.



[그림 III-3] 국가별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

### 2025년 국가별 통보 동향

2025년 TBT 통보문 발행 상위국은 케냐(530건), 우간다(494건), 탄자니아(460건), 르완다(449건), 부룬디(386건) 순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TBT 통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은 신규 및 개정 통보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5년에 기술규제 제·개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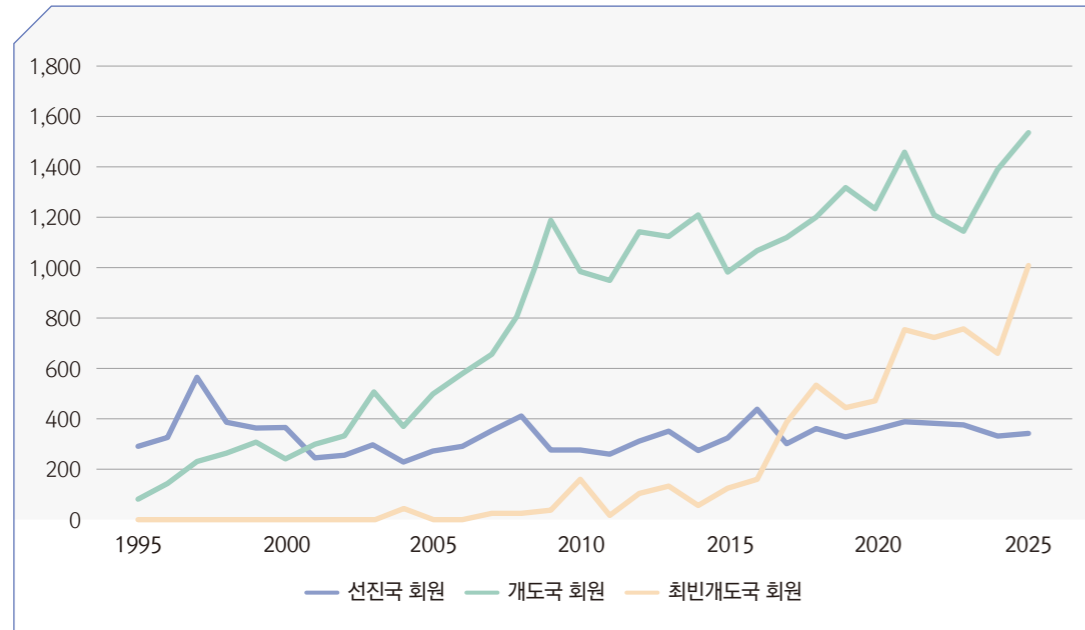


[그림 III-4] 2025년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

###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신규 통보 동향

[그림 III-5]에 따르면 2004년 이후로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신규 통보문 발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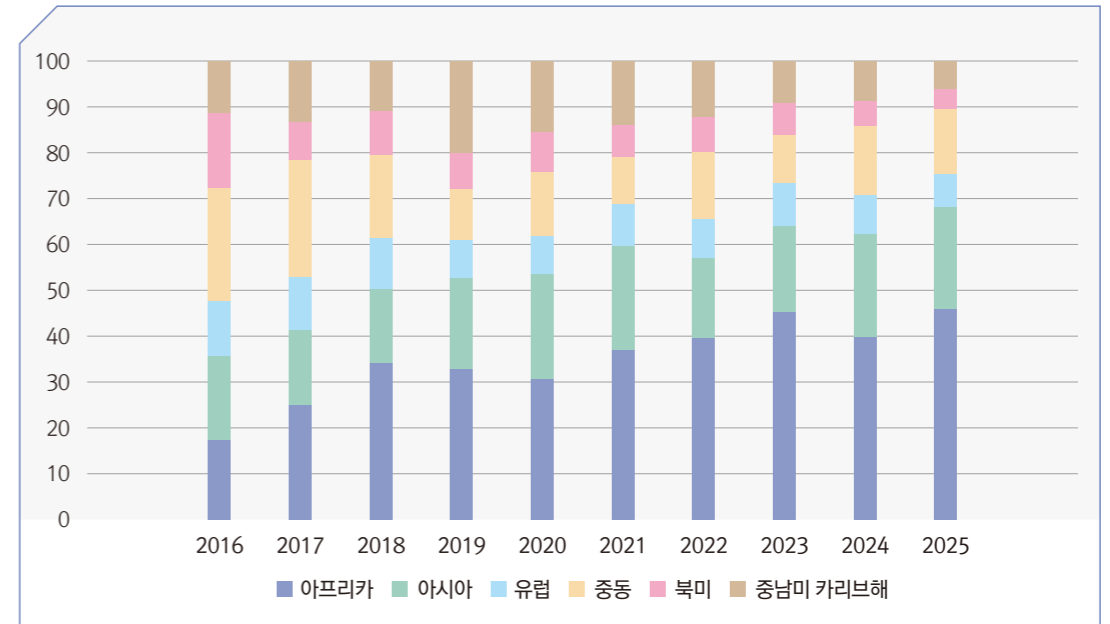
2025년 신규 통보를 살펴보면, 선진국이 12%,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어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관련 통보가 선진국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채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과거 선진국이 도입했던 기술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I-5]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신규 통보문 발행 추이 (단위: 건)

### 지역별 신규 통보 동향

최근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의 신규 통보문 비중이 2024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체 신규 통보문의 약 46%를 차지하며 다시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아시아 지역은 22%, 중동 지역은 14% 비중을 보였다.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이 발행한 신규 통보문 중 탄자니아와 케냐가 각각 약 18%, 르완다와 우간다가 각각 17%, 부룬디가 12%, 말라위가 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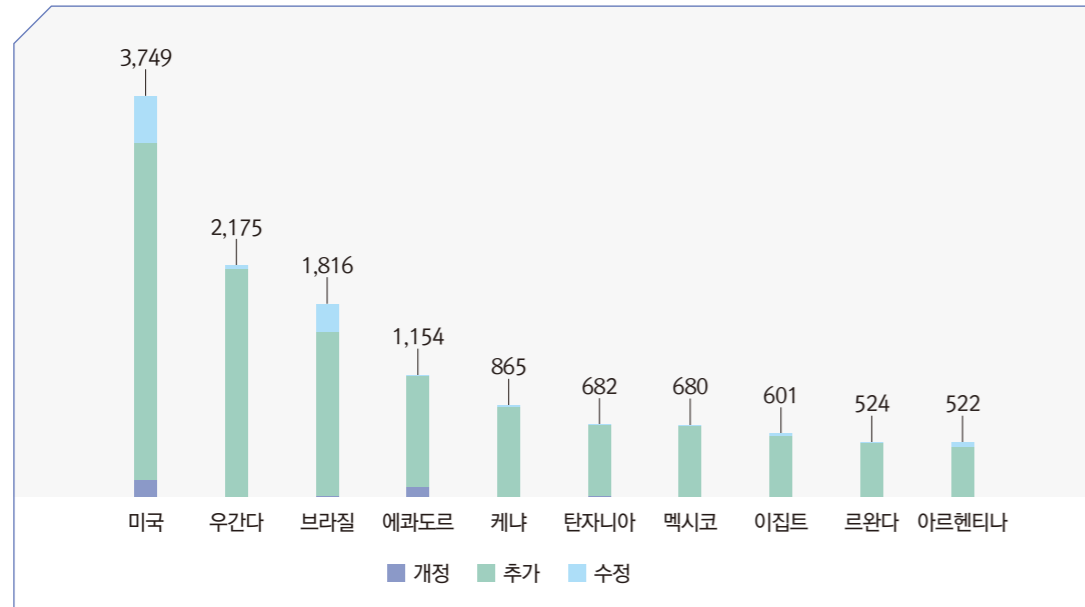


[그림 III-6] 최근 10개년 지역별 신규 통보문 발생 분포 (단위: %)

### 유형별 통보 동향

WTO TBT 위원회는 규제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통보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추가, 수정, 개정의 4가지 통보 형식을 권고하고 있다. 회원국은 기술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신규로, 기존 통보 규제와 관련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 조치의 철회 또는 폐지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수정, 개정 형식을 사용하여 통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 III-7]에서는 30년간(1995~2025년) 전체 연도별 후속(추가, 수정, 개정)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총 3,749건으로 가장 많은 후속 통보문을 발행하였고 우간다, 브라질, 에콰도르, 케냐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III-7] 전체 연도별 후속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 건)

## 2025년 추가(Addenda) 통보문 발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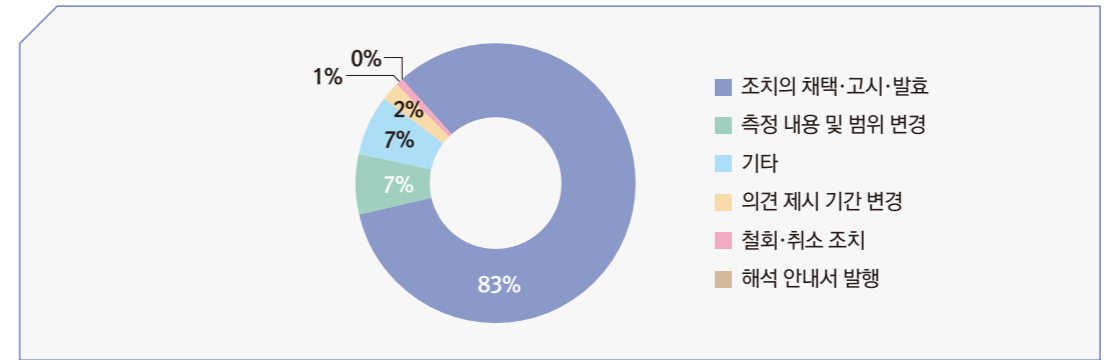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그림 III-7]에서도 나타나듯이, 후속 통보문 가운데 추가 통보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WTO TBT 회원국은 2020년 7월에 발행된 추가 통보문 형식에 따라 체크박스를 통해 발행 사유를 표시하고 있으며, 추가 통보문 발행 사유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추가 통보문 발행 사유

1	변경된 의견수렴일	6	통보 조치 철회일 또는 취소일
2	통보 조치의 채택일	7	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3	통보 조치의 공표일	8	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확인 출처
4	통보 조치의 시행일	9	기타
5	통보 조치의 출처		

[그림 III-8]에서는 2025년 전체 추가 통보문 발행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추가 통보문 중 83%를 차지하는 유형은 '조치의 채택(Adopted)', '고시(Published)', '발효(Entered into Force)'와 관련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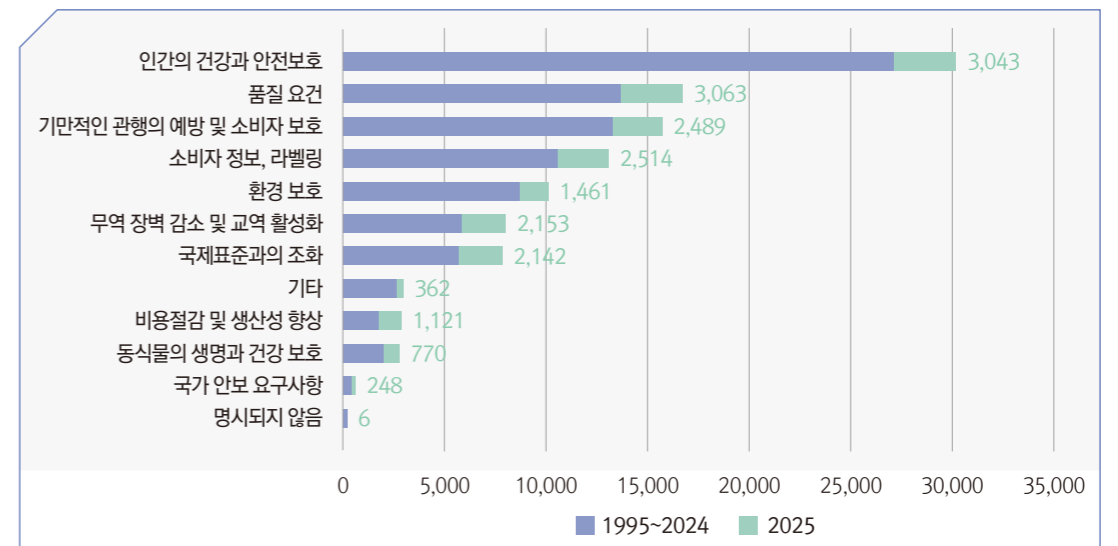
있다. 관련한 통보문 중 31%가 최종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였고, 2024년 약 45% 대비 14%p 감소하였다.



[그림 III-8] 2025년 전체 추가 통보문 발행 유형 (단위: %)

## 목적별 통보 동향

[그림 III-9] 1995~2024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목적을 비교한 결과, 순위에는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상위 7개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에는 '품질 요건',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호', '소비자 정보, 라벨링',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 순으로 가장 많이 통보되었다.



[그림 III-9] 목적별 통보문 발행 동향 (단위: 건)

## 분야별 통보 동향

[표 III-3]은 최근 3개년의 분야별 신규 통보 수 및 비중을 나타낸다.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농수산물 등 분야에 해당하는 품목의 기술규제 신규 통보가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의 화학 소재 관련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세라믹 분야의 신규 통보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식의약품 신규 통보가 가장 많이 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신규 통보의 약 29.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 최근 3개년(2023~2025) 산업분야별 신규 통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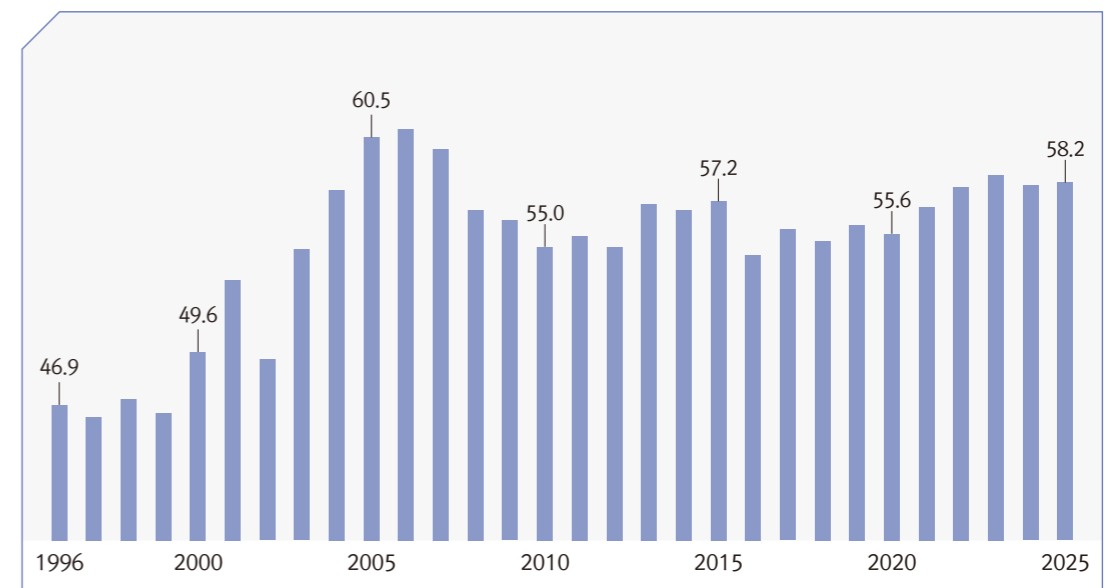
대분류	2023년		2024년		2025년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통보 건수	비중(%)
식의약품	613	27.1	679	28.8	853	29.6
화학·세라믹	449	19.9	304	12.9	469	16.3
농수산물	285	12.6	423	18	444	15.4
생활용품	210	9.3	131	5.6	237	8.2
전기전자	189	8.4	227	9.6	191	6.6
소재나노	95	4.2	118	5	161	5.6
기계	89	3.9	125	5.3	153	5.3
교통/안전	133	5.9	124	5.3	108	3.8
정보디지털	40	1.8	57	2.4	87	3
에너지	29	1.3	47	2	68	2.4
기타	36	1.6	61	2.6	44	1.5
건설	56	2.5	44	1.9	40	1.4
전 분야	24	1.1	16	0.7	21	0.7
바이오환경	12	0.5	0	0	2	0.1
합계	2,260	-	2,356	-	2,878	-

## 통보문 해당 품목(HS Code)별 현황

2025년 WTO 회원국의 통보 중 기술규제 해당 품목과 관련되는 HS Code 정보를 제공한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보문에 가장 많이 제공된 HS Code 현황은 전기기기 및 장비(HS 85)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계 및 기기(HS 84), 플라스틱(HS 39), 철강제품(HS 37) 순으로 관련된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

## 통보문의 의견수렴 기간

[그림 III-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5년 WTO 회원국이 제공한 신규 및 개정 통보문에 대한 평균 의견수렴 기간은 58.2일로 나타났으며,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해 권고되는 의견수렴 기간 60일보다 1.8일 짧았다. 최근 4년(2022~2025년)의 평균 의견수렴 기간은 58.0~58.6일 범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55.2~57.0일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이는 최근 회원국의 평균 의견수렴 기간이 권고 기준에 가까운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10] 신규 및 개정 통보문에 대한 평균 의견수렴 기간

(단위: 일)

# 02 WTO 특정무역 현안(STC)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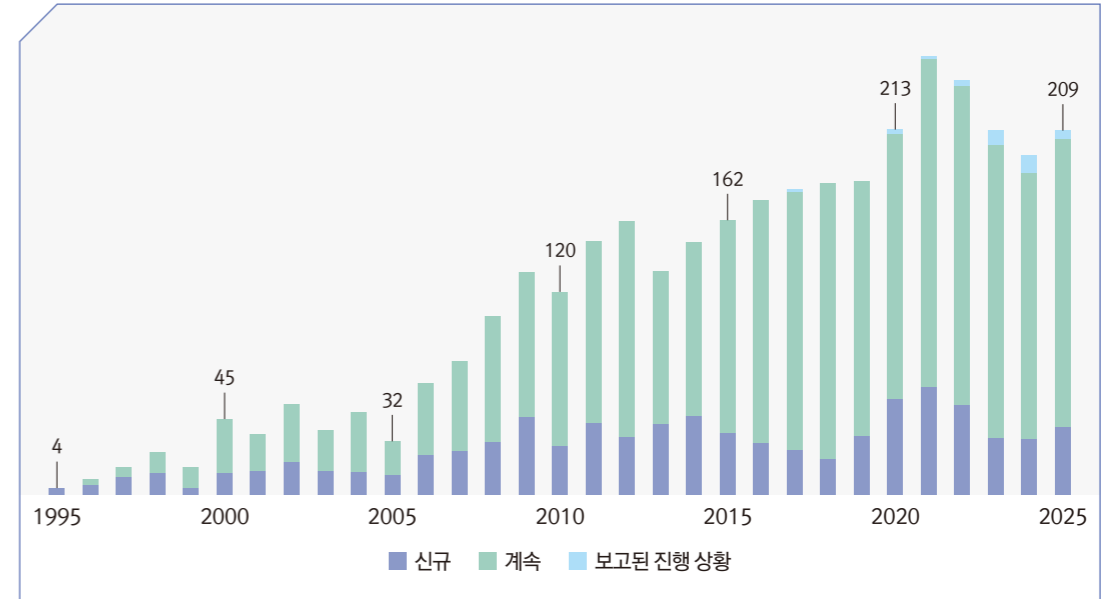
WTO TBT 위원회에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은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총 209건이 제기되며 증가하였다. 같은 해 TBT 통보 건수는 WTO TBT 협정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나 STC 제기 건수는 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회원국 간 사전 협의와 규제 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STC는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제기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술규제 논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연도별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STC는 회원국이 타국의 기술규제가 자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하는 사안으로, 신규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STC의 제기 목적과 세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기되는 기술규제가 실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II-11]에 따르면 1995~2025년간 총 3,618건의 STC가 논의되었고, 전체 회원국의 42%인 70개 회원국이 최소 1건의 STC를 제기하였다. WTO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STC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총 209건이 제기되며 증가하였다.



[그림 III-11] 연도별 STC 제기 동향(1995~202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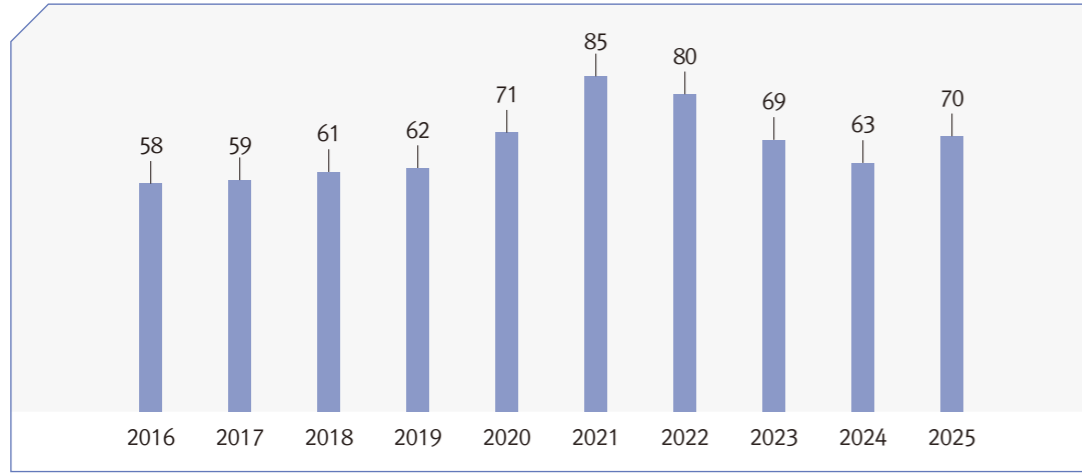
[표 III-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기된 신규·계속 현안에 대한 STC 건수는 연간 약 200건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TBT 통보 수가 3년간 연속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음에도 STC 제기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통보 사안이 STC 제기 이전 단계에서 회원국 간 사전 협의 및 규제 조정을 통해 사전에 조정·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4] 신규 및 계속 현안 관련 STC 제기 현황(2023~2025)

(단위: 건)

구분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 현안		34	33	40
계속 현안		172	157	169
합계		206	190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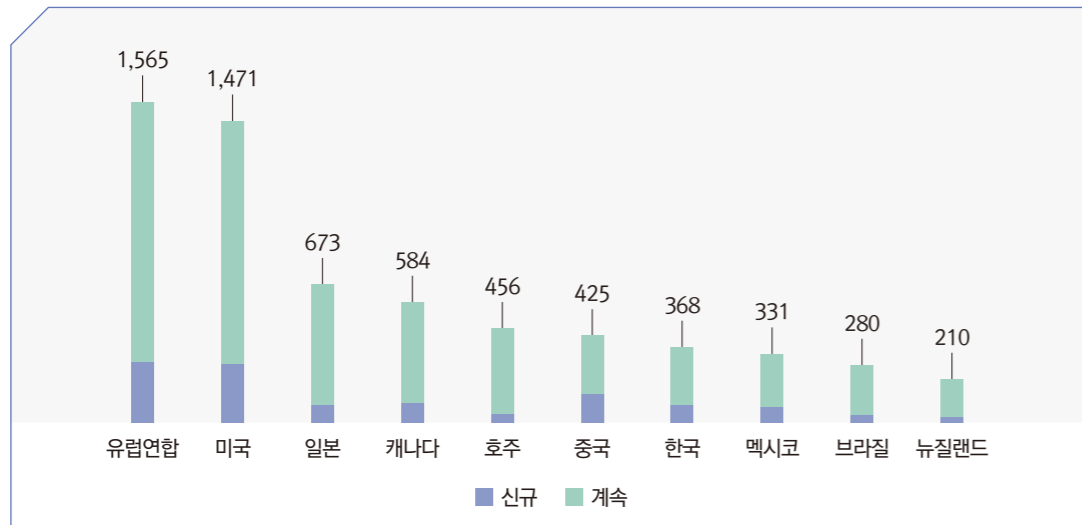
[그림 III-1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WTO TBT 위원회 회의당 평균 STC 제기 건수는 2021년 85건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7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WTO TBT 위원회에서 일부 회원국이 STC 제기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위원회 동안 양자 간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철회된 STC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9건, 2025년에는 7건이다.



[그림 III-12] WTO TBT 위원회 회의 당 평균 STC(2016~202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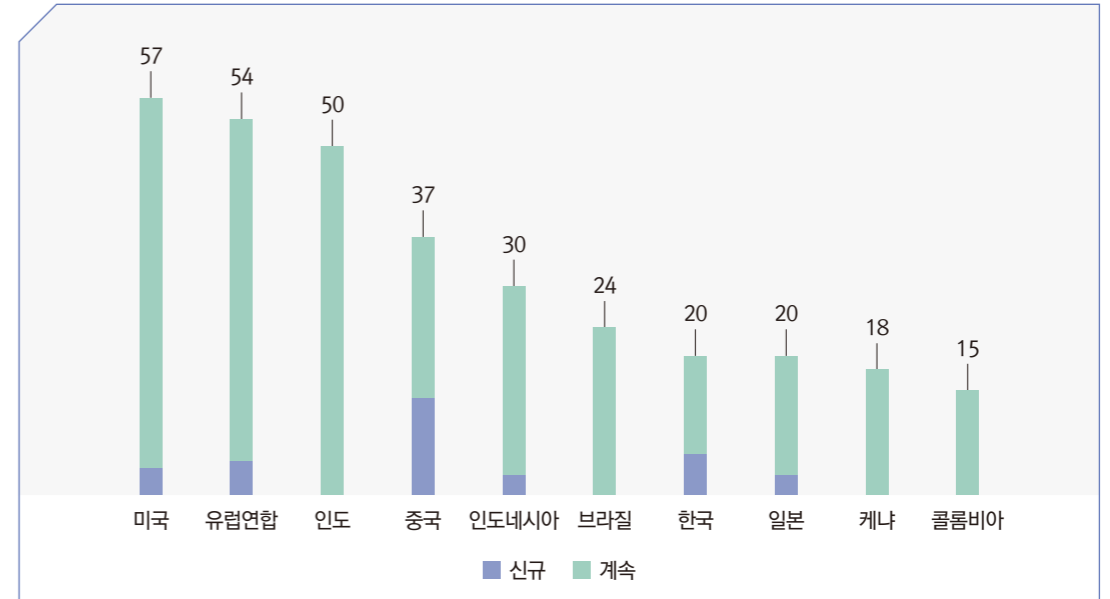
### 국가별 STC 제기 동향

[그림 III-13]에 따르면, 1995년 이후 STC 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유럽연합(1,565건)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1,471건), 일본(673건)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선진국이 무역장벽이 되는 기술 규제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를 통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STC를 총 368건 제기하였다.



[그림 III-13] STC 제기 상위 10개국(1995~2025) (단위: 건)

[그림 III-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3차례의 WTO TBT 위원회를 통해 미국(57건), 유럽연합(54건), 인도(50건), 중국(37건)이 STC 제기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이는 주요 교역국이 여전히 STC 논의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STC를 총 20건 제기하였다.



[그림 III-14] STC 제기 상위 10개국(2025)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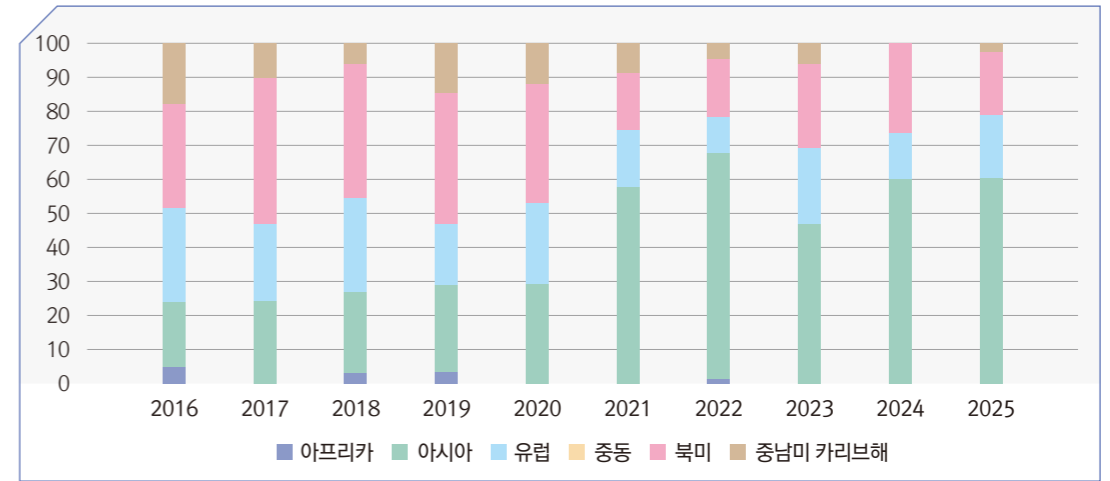
[표 III-5]와 같이 2025년에 한국이 제기한 STC 안건은 총 20건이며, 이 중 중복 안건을 제외하면 6개국 13건(신규 6건, 기존 7건)이다.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규제, 화학물질 품질관리 규제 등에 대해 제기하였고,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배터리 규제 등에 대해 제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가전제품·일차전지 인증 규제에 대해 제기하였다. 중국 대상으로는 식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서만 제기하였으며, 최소 5년 이상 반복 제기된 장기 미해소 현안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의 리튬이차전지 규제, 호주의 화학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각각 제기하였다.

[표 III-5] 한국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2025)

구분	대상국가	분류	규제
1	인도	기존	DTV 위성튜너 BIS 인증
2		기존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2차)
3		신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규정) 명령
4		신규	필기 및 인쇄용지, 코팅지 및 판지 품질 관리 명령
5	유럽연합	기존	배터리 규정
6		기존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7		신규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개정
8	인도네시아	신규	가전제품 Safety SNI 인증 규정
9		신규	일차전지에 대한 SNI 인증 규정
10	중국	기존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11		기존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고) 규정
12	베트남	기존	정보통신기기용 리튬이차전지 규정
13	호주	신규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탄(DBDPE) 함유 제품 수입 및 제조 금지 규정

### 지역별 STC 제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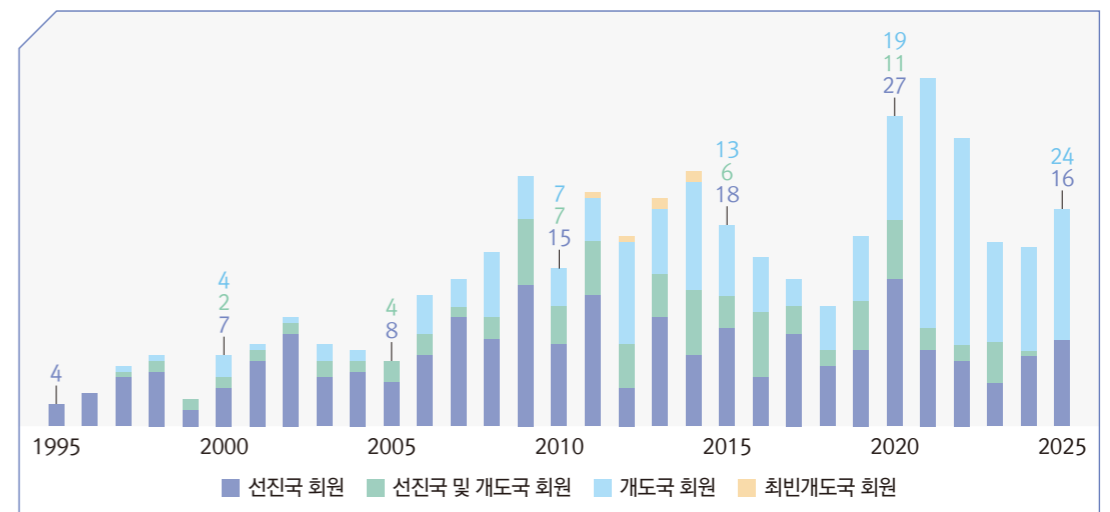
[그림 III-15]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지역별로 WTO 회원국들이 제기한 STC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순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지역의 STC 제기 비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지난 10년간의 최대 비율(약 60% 이상)을 기록하고, 2023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증가했다. 유럽, 북미 지역의 제기 비율은 최근 3년간 30% 미만을 유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각각 전체의 19%, 18%를 차지했다. 중남미 지역 제기 비율은 매년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에는 2%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총비율은 매해 10%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15] 지역별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비율(2016~2025) (단위: %)

###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신규 STC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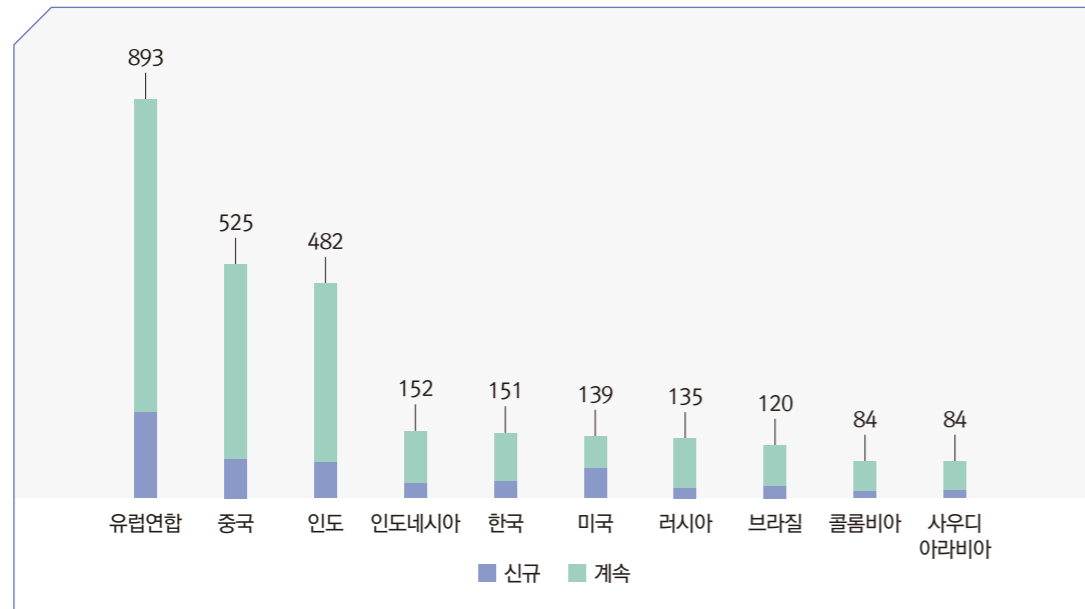
[그림 III-16]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STC의 제기 동향을 개발 수준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선진국이 STC를 제기했으나, 점차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비중이 증가해 2021년 이후에는 전체 STC 제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5년에 신규로 제기된 STC는 개발도상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진국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 이슈 제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16]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1995~2025) (단위: 건)

### 국가별 STC 피제기 동향

지난 30년간 STC를 가장 많이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그림 III-17]과 같이 유럽연합(893건)이 가장 많은 STC를 제기 받았고, 중국(525건), 인도(482건), 인도네시아(152건), 한국(151건)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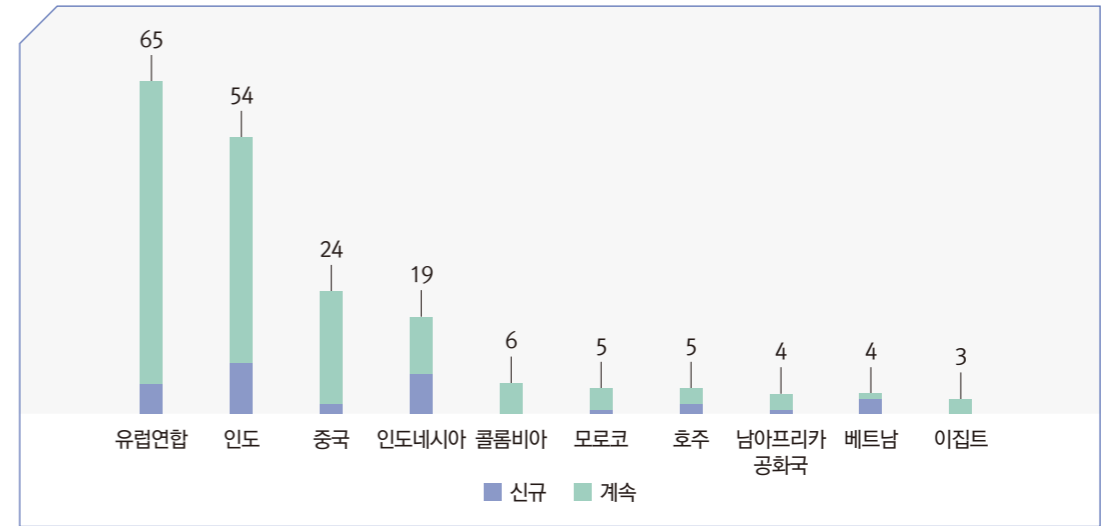


[그림 III-17]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1995~2025) (단위: 건)

[그림 III-18]을 살펴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STC를 가장 많이 제기 받은 국가는 유럽연합(65건), 인도(54건), 중국(24건)이다. 피제기 상위 10개국에서 이들 상위 3개국의 STC가 차지하는 비중이 75.7%이며, 2025년 신규 안건보다 지속 제기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식약처)」에 대해 3차례 STC를 제기받았다.

[표 III-6] 한국이 제기 받은 특정무역현안(STC)(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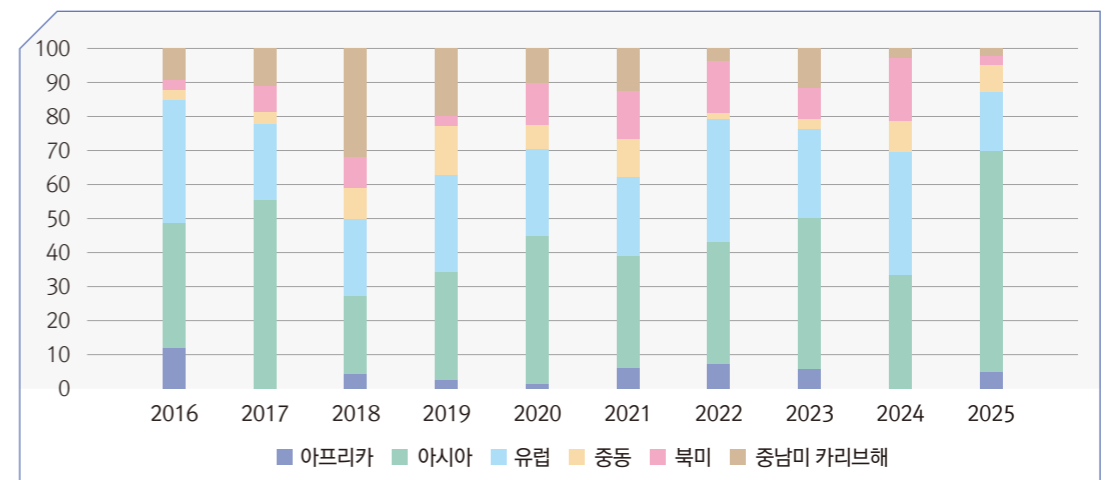
구분	제기 국가	분류	특정무역현안(STC)	소관부처
1	캐나다	신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III-18]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받은 상위 10개국(2025) (단위: 건)

### 지역별 STC 피제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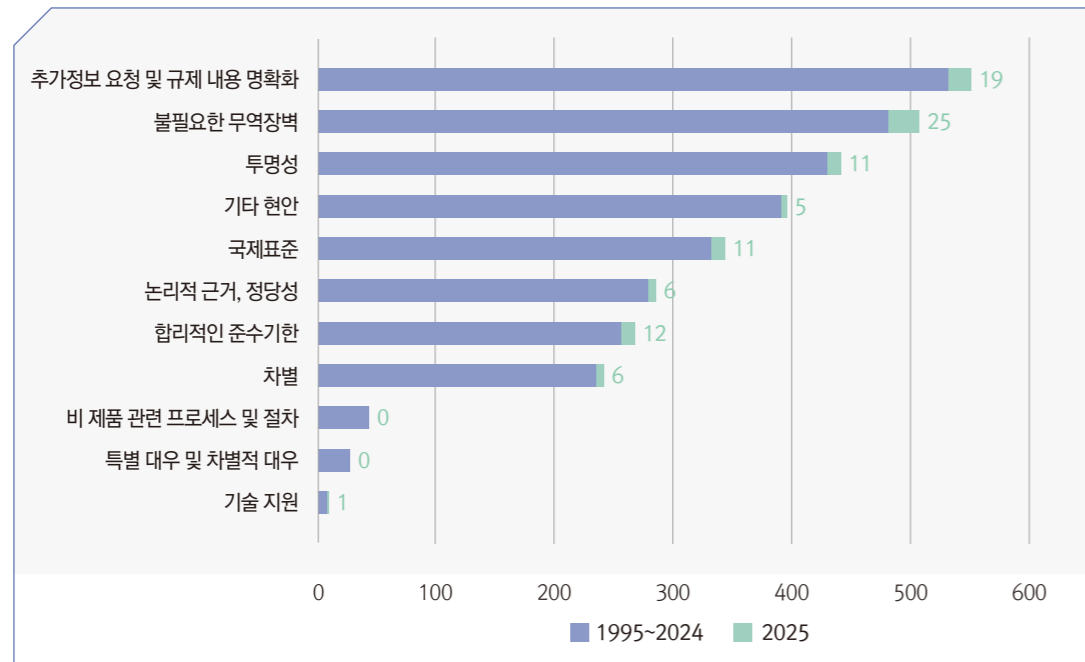
[그림 III-19]는 최근 10년간 지역별로 WTO 회원국들이 제기 받은 STC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피제기 비율이 나타난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STC 피제기 비율은 제기 비율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STC 제기 비율보다 피제기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지역별 특정무역현안(STC) 피제기 비율(2016~2025) (단위: %)

### 유형별 STC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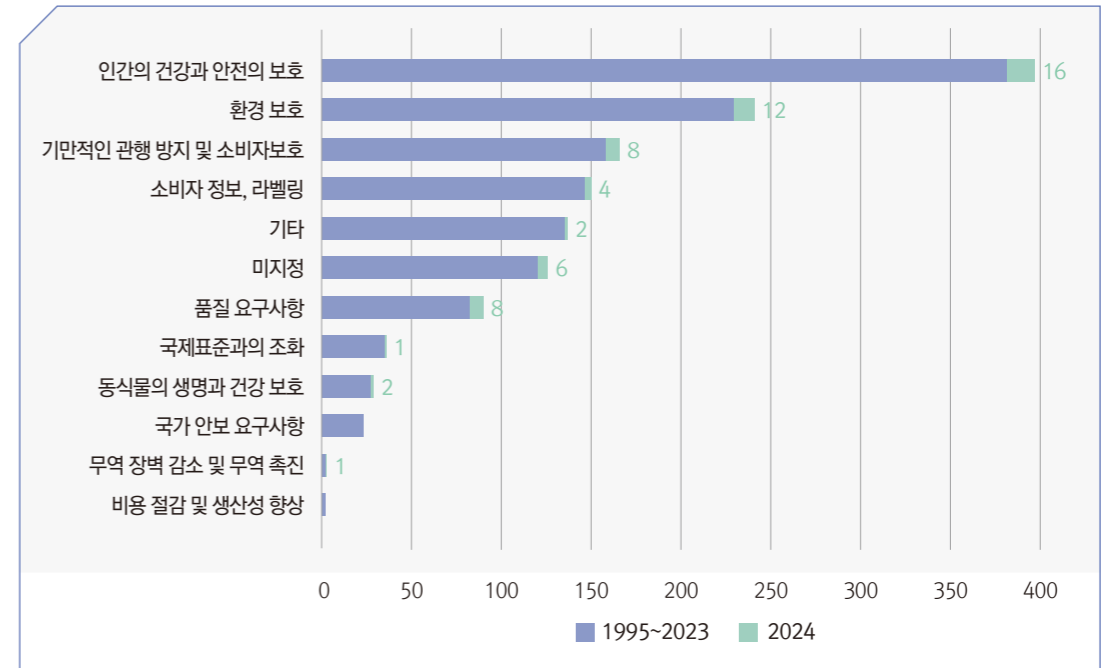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제기된 신규 STC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정보 요청 및 규제 내용 명확화'와 관련된 STC가 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필요한 무역장벽' 507건, '투명성' 441건, '기타 현안' 396건 순으로 논의되었다. 2025년에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25건, '추가정보 요청 및 규제 내용 명확화'가 19건, '합리적인 준수기한' 12건 등이었다.



[그림 III-20]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유형별 현황(1995~2025) (단위: 건)

### 목적별 STC 동향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제기된 신규 STC를 목적별로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에 대해 STC(397건)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이는 TBT 통보문에 명시된 주요 목적과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환경 보호(241건), 기만적인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166건), 소비자 정보, 라벨링(1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목적별 현황(1995~2024) (단위: 건)  
※ WTO 자료에 2025년 최신화가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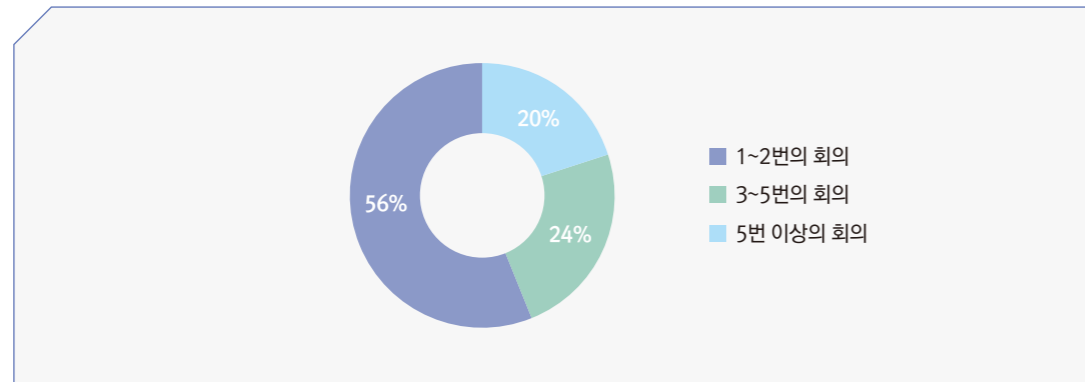
### 신규 STC 해당 품목(HS Code)별 현황

2025년에 제기된 신규 STC에 해당하는 품목 현황으로, 전기기기 및 장비(HS 85)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철강(HS 72), 기계 및 기기(HS 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년 신규 STC의 주요 키워드는 환경, 가정용품, 건설, 차량 등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기기기 및 장비(HS 85), 철강(HS 72) 등 주요 산업 분야가 환경, 가정용품, 건설 관련 규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STC 안건별 제기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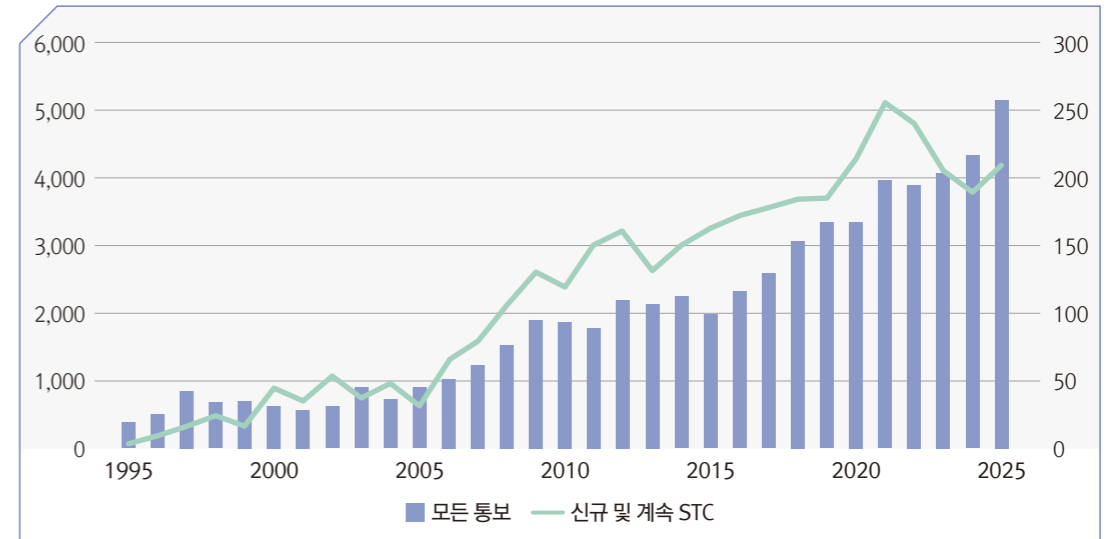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25년까지 STC 안건별 제기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STC 중 56%가 1~2건 제기되었고, 24%는 3~5건, 나머지 20%는 5건 이상 제기되었다. STC 제기 횟수는 회원국들이 현안에 부여하는 중요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전 유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2회 회의에서 제기된 STC보다 5회 이상 반복 제기된 STC는 현안 해결의 진전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림 III-23] 제기 빈도별 특정무역현안(STC)(1995~2025)

### 통보문과 STC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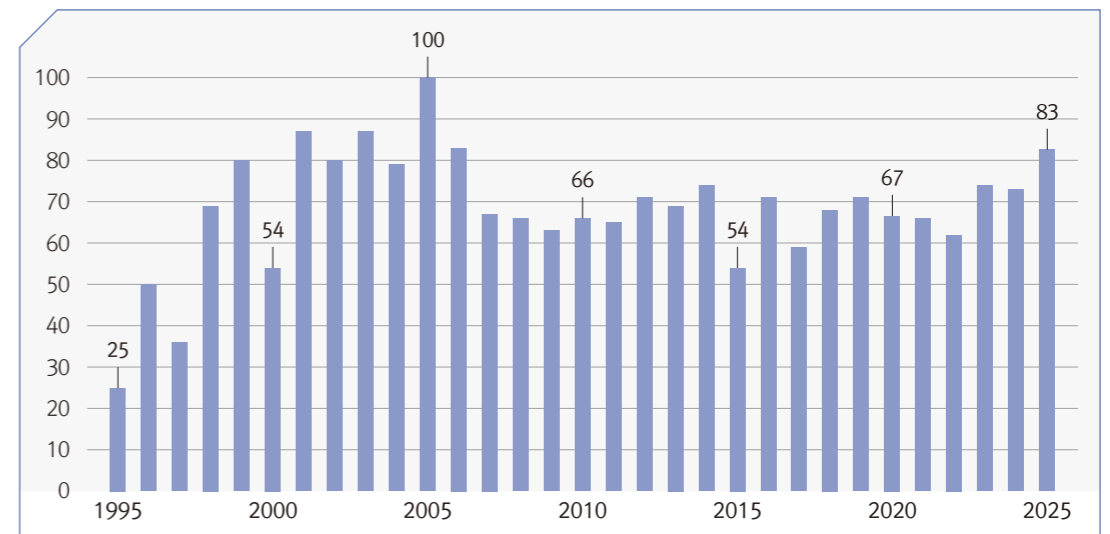
[그림 III-24]와 같이 1995년 이후 통보문과 STC 제기 건수는 모두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STC 제기 건수는 감소하다가 2025년 다시 증가했다. 이는 회원국들의 TBT 통보 증가가 STC 제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일부 통보 사안이 STC 제기 이전 단계에서 회원국 간 사전 협의 및 조율 등을 통해 조정·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24]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동향(1995~2025)

(단위: 건)

1995년 이후 제기된 전체 STC 중 WTO TBT 통보 조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전체 STC 비율은 69%이다. [그림 III-25]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규 STC의 83%가 통보문 관련, 나머지 17%는 회원국에 통보되지 않은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25] 통보 조치와 관련해 논의된 신규 STC 비율(1995~2025)

(단위: %)

2025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부록

1. WTO TBT 협정의 이해
2. WTO TBT 통보 절차
3. FAQ(10문 10답)

# 01 WTO TBT 협정의 이해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강제성 있는 다자간 협정이다.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본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제·개정할 때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차별 원칙, 국제표준 채택 등이 주요 원칙이다.



## WTO TBT 협정 개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TBT)이 세계 주요 교역국의 현안 과제로 부상하였다.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미국, 일본 등 38개국이 GATT TBT 협정을 채택하였고, 이듬해인 1980년 1월 1일 TBT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제한적이었다.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WTO 회원국 128개국 모두가 가입하여 강제성 있는 WTO TBT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요건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에 있어 기술규정, 표준 등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교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불투명하거나 차별적 혹은 부당한 조치는 각국의 무역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WTO TBT 협정의 목적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과 환경보호 등이 해당한다.

TBT 협정의 범위는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 조치와 정부 조달 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포괄한다. 참고로 SPS 협정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하는 조치다.

##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 첫째, 불필요한 장벽 금지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 둘째, 비차별 원칙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동종 제품 및 타 회원국의 동종 제품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셋째, 국제표준의 채택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 하여야 한다.

\* 단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로 정당한 목적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

### 넷째, 투명성 보장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며, 기술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처를 설치해야 한다.

\* 통보와 함께 의견제시기간을 최소 60일, 가능한 경우 90일 이상을 부여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WTO TBT 위원회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점에서 수입의 가치나 중요성, 수입의 성장 잠재성, 그리고 회원국의 생산자가 제안된 조치를 준수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WTO에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WTO TBT 협정의 특징

-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WTO 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에서도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임의 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한다.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 WTO TBT에 대한 정보는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확인 가능



# 02 WTO TBT 통보 절차

WTO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의 제·개정 내용을 TBT 통보문으로 작성하여 WTO 통보 제출 시스템인 ePing을 통해 제출한다. 통보문은 신규, 추가, 수정, 개정 등으로 구분된다. 통보 대상인 경우, 국내 입법예고와 병행해 60일 이상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후 최종안 공표 및 시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TBT 통보문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요건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역상 방해 요소가 되는 조치에 대해 특정한 양식(규제명, 규제 목적 및 내용 등을 작성)을 이용해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TBT 통보문(notification)이라 한다.

통보의 목적은 ① 조치의 도입 및 변경에 대한 알림의 목적과 ②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를 변경 또는 철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WTO TBT 통보문 종류 및 주요 내용

TBT 통보는 WTO 사무국이 회원국을 위해 개발한 WTO TBT 통보제출 시스템(ePin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회원국의 TBT 질의처는 온라인으로 통보문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하고 있다. ePing을

통해 제출한 통보는 WTO 사무국에 전달되며, 평균 2일 이내에 모든 WTO 회원국에 회람된다. WTO 사무국에 보내는 TBT 통보문은 WTO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제출 시스템(ePing)

<https://epingalert.org/>


회원국이 TBT 통보를 작성하고 WTO에 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원국의 경우 제출한 통보문의 체계적 관리와 통보진행 절차 추적이 가능하다. WTO 사무국의 경우 ePing을 통해 통보 처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 ※ 주요 검색 조건

- Area(SPS, TBT): 통보문 종류별 검색
- Free text search: 관련 검색어별 통보문 검색 가능
- Notification symbol: 통보문 번호 입력
- Notifying Member: 회원 국가명(영문)
- Date of distribution from/to: 통보일(달력을 선택하여 기간 설정 가능)

[표 V-1] 통보문 종류

통보문	문서번호 생성 방식	주요 내용
신규 (New Notification)	G/TBT/N/세 자리 국가코드/번호	기술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 60일 이상 의견수렴 필요 - 규제 원문을 첨부하여 통보
추가 (Addendum)	G/TBT/N/세 자리 국가코드/번호/Add.1	최초 통보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기술규정의 최종 공표 시 - 기술규정 채택, 공표, 시행 시 관련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 - 의견수렴 기간 변경(연장 또는 재수렴) - 기술규정의 철회 또는 폐기 시, 신규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 또는 범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정된 경우(의견 재수렴 고려) -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정보제공 - 최초 통보문 및 기술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수정 (Corrigendum)	G/TBT/N/세 자리 국가코드/번호/Corr.1	최초 통보문 내용의 변경 없이 경미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개정 (Revision)	G/TBT/N/세 자리 국가코드/번호/Rev.1	통보된 기술규제(안)의 채택 또는 시행 전 규제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60일 이상 의견수렴 필요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Member]/[Number]

(00-0000)

Date  
Page:

---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p><b>1. Notifying Member:</b>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s 3.2 and 7.2):</p>
<p><b>2. Agency responsible:</b></p>
<p><b>3. Notified under Article 2.9.2 [ ],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other:</b></p>
<p><b>4. Products covered (HS codes or national tariff lines. ICS numbers may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b></p>
<p><b>5. Details of notified document(s)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means of access):</b> Link to notified document(s) and/or contact details for agency or authority which can provide copies upon request:</p>
<p><b>6. Description of content:</b></p>
<p><b>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b></p>
<p><b>8. Relevant documents:</b> Relevant notifications:</p>
<p><b>9. Proposed date of adoption:</b>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p>
<p><b>10. Provision of comments:</b> Final date for comments: [ ] 60 days from notification Contact details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p>

[그림 V-1] 신규 통보문 서식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Member]/[Number]/Add.#

Date \_\_\_\_\_

Page: \_\_\_\_\_

Original: \_\_\_\_\_

(00-0000)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Addendum*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_\_\_\_\_,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_\_\_\_\_.


**Title:** [Notified measure]

Reason for Addendum:	
<input type="checkbox"/>	Comment period changed - date:
<input type="checkbox"/>	Notified measure adopted - date:
<input type="checkbox"/>	Notified measure published - date:
<input type="checkbox"/>	Notified measure enters into force - date:
<input type="checkbox"/>	Text of final measure available from <sup>1</sup> :
<input type="checkbox"/>	Notified measure withdrawn or revoked - date: Relevant symbol if measure re-notified:
<input type="checkbox"/>	Content or scope of notified measure changed and text available from <sup>1</sup> : New deadline for comments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nterpretive guidance issued and text available from <sup>1</sup> :
<input type="checkbox"/>	Other:

**Description:** [Free text – brief summary]

\_\_\_\_\_

[그림 V-2] 추가 통보문 서식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Member]/[Number]/Corr.#

Date \_\_\_\_\_

Page: \_\_\_\_\_

Original: \_\_\_\_\_

(00-0000)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Corrigendum*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ated \_\_\_\_\_, is being circulated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_\_\_\_\_.

\_\_\_\_\_


**Reason for corrigendum:**

- Notification circulated in error
- Clerical error in notification
- Clerical error in notified measure/reference document
- Other

**Description:**

\_\_\_\_\_

[그림 V-3] 수정 통보문 서식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Member]/[Number]/Rev.#

Date

Page:

(00-0000)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Revis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b>1.</b>	<b>Notifying Member:</b>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s 3.2 and 7.2):
<b>2.</b>	<b>Agency responsible:</b>
<b>3.</b>	<b>Notified under Article 2.9.2 [ ],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other:</b>
<b>4.</b>	<b>Products covered (HS codes or national tariff lines. ICS numbers may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b>
<b>5.</b>	<b>Details of notified document(s)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means of access):</b> Link to notified document(s) and/or contact details for agency or authority which can provide copies upon request:
<b>6.</b>	<b>Description of content:</b>
<b>7.</b>	<b>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b>
<b>8.</b>	<b>Relevant documents:</b> <b>Relevant notifications:</b>
<b>9.</b>	<b>Proposed date of adoption:</b> <b>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b>
<b>10.</b>	<b>Provision of comments:</b> <b>Final date for comments:</b> [ ] 60 days from notification <b>Contact details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b>

[그림 V-4] 개정 통보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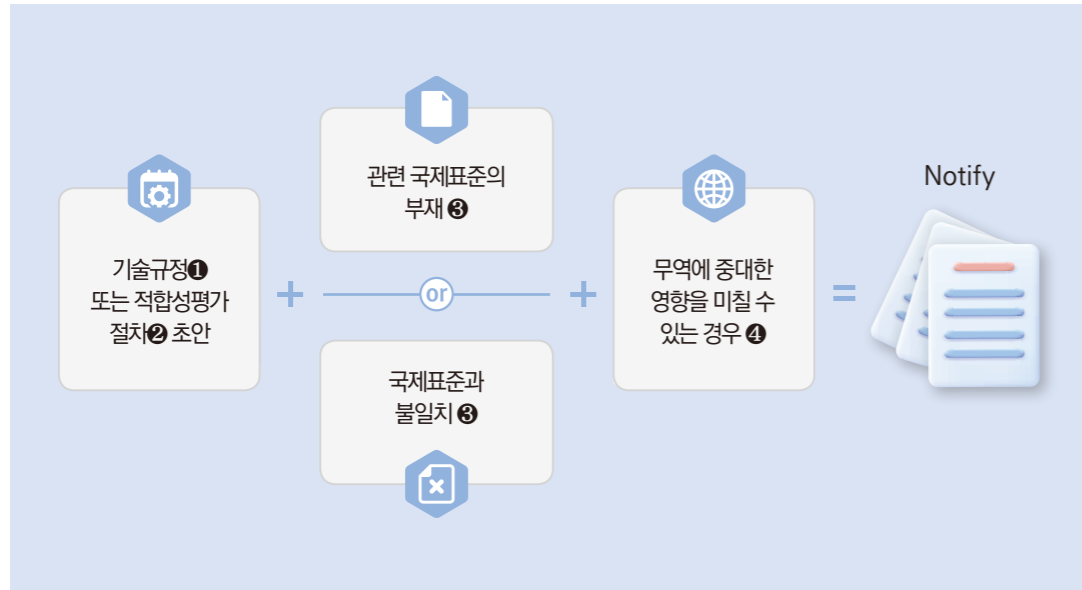
## 통보 절차 및 소요기간

[표 V-2] 통보 절차 및 소요기간

업무 내용	관련 부처	소요기간	관련 내용
통보문 작성	담당 부처		입법예고와 병행 (제·개정 법안/행정규칙 모두 포함) ① 통보대상 여부 검토 ② 통보시점 결정 ③ 통보문 작성 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통보 요청 공문 발송 (질의처: tbt@korea.kr, 043-870-5315)
통보문 검토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1~2일	
통보문 등록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1~2일	TBT 제출 시스템(TBT Notification Submission System)에 통보문 등록/제출
통보문 발행	WTO 사무국	3~7일	WTO 웹사이트 게시 * <a href="https://epingalert.org">https://epingalert.org</a>
의견 수렴	타 회원국	60일	
최종안 추가통보	담당 부처		최종안 공표와 동시 진행
시행	담당 부처		채택 후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경과기간 부여 권고

## WTO TBT 통보대상 검토 절차

WTO TBT 통보대상 검토 절차는 해당 규제를 식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WTO에 통보되어야 하는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TBT 질의처에서 많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다. TBT 협정문 제2조 9항과 제5조 6항에 따라 해당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통보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는 [그림 V-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V-5] 통보대상 여부 판단

### 1 기술규정 여부 판단

1	제품의 품질, 구성, 안전성, 성능, 치수, 모양, 재질, 점성 등에 관한 것이며 강제적 요건인가?
1.1	제품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제품 관련 기술요건이 신설, 변경되는가? 예)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요건 신설
1.2	제품에 특정 부품,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가? 예) 특정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1.3	제품 내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가? 혹은 사용가능한 성분을 추가, 삭제하는가? 예)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목록 신규 추가
1.4	제품 내 특정 성분의 함량, 농도, 사용기준을 신설, 변경하는가? 예) 염모제의 유효성분 상한 농도를 변경
1.5	제품 내 특정 원료의 기준 또는 규격을 신설, 변경하는가? 예) 건강기능식품 내 특정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1.6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준수해야 할 제조기준, 품질관리기준, 제조방법이 신설, 변경되는가? 예) 의약품 제조기준 변경,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제형에 '필름' 추가
1.7	규제의 적용대상이 추가, 삭제되는가? 예)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11종으로 확대, 위생용품의 범위를 변경
1.8	규제 적용범위, 대상품목을 조정, 명확히 하는 내용인가? 예) 벌레를 쫓기 위해 특정 물질이 처리된 말 덮개가 살생물제임을 명확히 함(EU)
1.9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이 변경되거나 특정 제품을 등급 대상에 추가, 삭제하는가? 예) 냉난방기의 1등급 기준 상향, 상업용 냉장진열대를 에너지효율 등급 대상에 추가
1.10	(등급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경우) 품목의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인가? 예) 의류기기 3등급 → 4등급으로 변경

## ㉒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여부 판단

2	시험, 검사, 인증, 인허가에 관한 것이며, 강제적 요건인가?
2.1	제품출시를 위해 취득해야 할 제품 관련 인증, 인허가가 신설, 개정되는가?
2.2	시험, 검사, 인증의 대상품목이 조정되는가? 혹은 시험, 검사, 인증의 항목이 추가, 삭제되는가? 예) 구조용 집성재의 검사항목 추가, 어린이용 가구의 전도시험 신설
2.3	인허가를 위해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방법이 변경되는가? 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타민C 시험방법 변경
2.4	특정 인증제도가 임의인증이지만, 인센티브, 조달, 소비자선호 등에서 '사실상 강제'로 인식되는 인증제도이면서, 그 인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가?
2.5	인허가 및 인증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추가, 면제, 변경하는가?
2.6	인허가 및 신고를 갱신, 연장하는데 필요한 절차, 요건에 관한 사항인가?

## ㉓ 관련 국제표준 부재 또는 불일치 여부 판단

3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가? - 기술규정의 경우, 관련 '국제표준'이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ISO/IEC 등 국제표준이 없거나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경우 TBT 통보 대상
	- 적합성평가 절차의 경우, 관련 '국제체계'가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IEC CB Scheme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 및 권고가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 TBT 통보 대상
	- 적용 예정인 표준의 경우, 관련 '국제표준'이 부재하거나 부합하지 않는가? 예)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TBT 통보 대상

## 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부 판단

4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 품목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1	해당 품목의 수입액이 큰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크지 않으나 해당 품목이 수입액이 큰 타 품목의 원료,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인가?
4.2	해당 품목 또는 유사한 품목이 최근 무역이슈가 되었거나 특정국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인가? 예) STC 제기,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대상 제품 등
4.3	특정 제품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가? 예) 아이새도, 선크림처럼 단품목이 아닌, 화장품 전체에 대한 규제인 경우, 화평법처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4	(기술규제는 아니지만)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신설, 변경되는 경우인가? 예) 유기농 제품의 수입을 위한 전자인증서 시스템을 도입(EU)
4.5	우리나라 또는 타회원국에서 유사한 규제안을 통보한 적이 있는가?
4.6	현재는 수입액이 크지 않으나, 추후 수입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현재 소수의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추후 더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4.7	특정 제품군이 특정 다자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가? 예) WTO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품목 등

## 통보 시점

WTO TBT에 통보 대상인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입법예고가 필요하므로 국내 입법예고\* 시 WTO TBT 통보를 병행할 것을 권장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7조

# 03 FAQ (10문 10답)



무역기술장벽은 국제표준 불일치, 중복된 인증 절차, 차별적 대우 등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은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KnowTBT 포털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정보 검색과 TBT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국가·HS코드 기준의 관심 규제 탐색 등도 가능하다.



## Q1. 무역기술장벽(TBT)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무역기술장벽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
- 적합성평가 절차의 중복
-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상대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중복 및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무역의 기술적 장애요소로 작용하므로 무역기술장벽이 됩니다.

## Q2. 특정무역현안(STC)이란 무엇인가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각 회원국은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 양자 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분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3. SPS 협정이란 무엇이며, TBT 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문제로 인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국제 규범입니다. SPS 협정은 식품, 음료의 첨가제, 질병 원인체 등에 대해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각국의 동·식물과 관련한 검역 및 위생 관련 조치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간 공용 협정입니다. 반면,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조치의 경우는 TBT 협정을 통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 Q4. WTO TBT 통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통보된 규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회원국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 간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 미통보 규제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당국 포털, 글로벌 인증기관,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급력이 큰 미통보 규제를 신속히 발굴·분석하여 국내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WTO TBT 위원회 참석 및 양자 협의를 통해 해당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Q5. WTO TBT 위원회란 무엇인가요?

WTO TBT 협정문 제13조에서는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6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TBT 협정문 15.4에 따라, 위원회는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검토하는 3년 주기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Q6. 우리나라는 TBT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국내 수출 증대와 기업 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에 TBT종합지원센터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등 산업 분야별 협회·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의 TBT 대응활동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작업 진행을 통해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Q7.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서비스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http://www.knowtbt.kr))에 로그인한 후 상담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 내용은 확인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이 배정되며, 신청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 절차·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대응 지원, 비영어권 규제원문 번역,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정보 제공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8. 해외 기술규제 정보가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 화학, 생활, 기계 등 각 산업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KnowTBT 포털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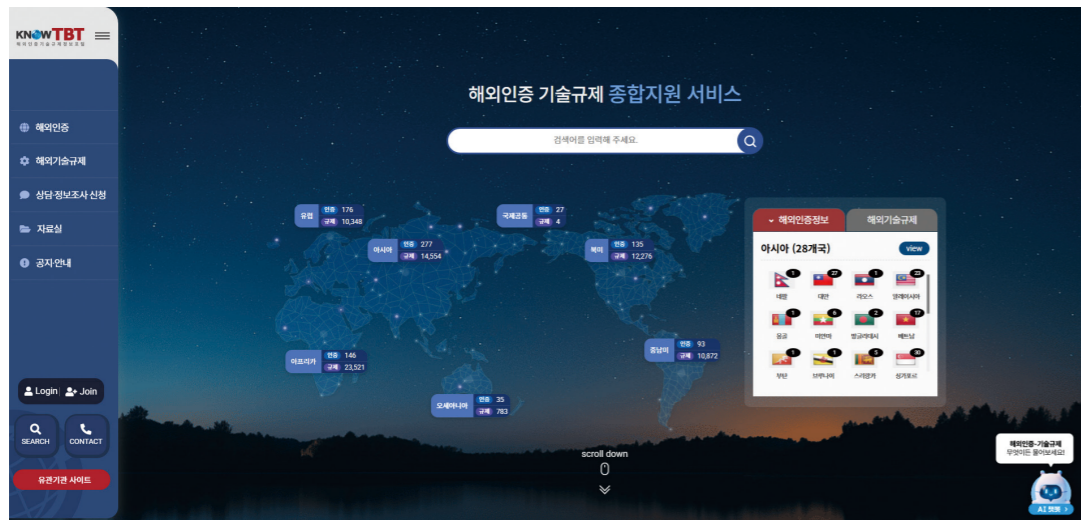


[그림 V-6] WTO TBT 위원회 회의

**Q9. KnowTBT 포털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집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Know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TBT 통보문과 미통보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요 기술규제를 정리한 분석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규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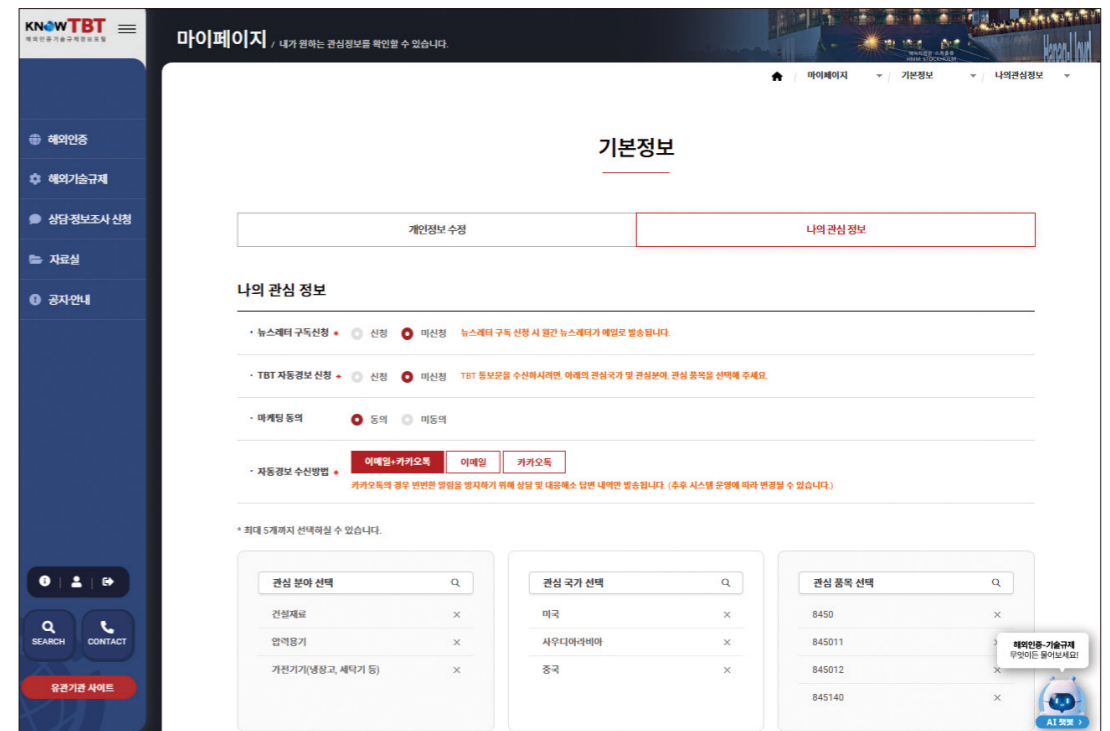
또한 기술규제와 관련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포털 개편을 통해 해외 인증 정보를 국가·품목·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V-7] KnowTBT 포털사이트 화면

**Q10. 관심 규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Know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국가·산업분류·HS Code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회원가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정보-나의 관심정보' 탭을 통해 관심국가 및 분야, 품목(각 최대 5개)을 설정하면 관심 규제 관련 TBT 통보 정보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V-8] KnowTBT -나의 관심 정보 등록 화면

**2025  
무역기술장벽(TBT)  
연계보고서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

**편집위원**

국가기술표준원	배소현
국가기술표준원	이윤희
TBT종합지원센터	배대성
TBT종합지원센터	정수정
TBT종합지원센터	김덕은
TBT종합지원센터	윤여주

**자문위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규로
연세대학교	곽주영
롯데케미칼	윤제훈
현대자동차	노성중
LG전자	오진형

# 2025 무역기술장벽 연계보고서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

발행일 2026년 5월  
발행인 김대자  
발행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521~28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3-870-5521~28 Fax 043-870-5682 E-mail tbt@korea.kr